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 VI

- 주요 친일단체(1920~1937) -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 VI

초판 1쇄 발행 2008년 12월 1일

발행인 || 성대경

발행처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 주소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청계천로 11 청계11빌딩 5층
- 전화 02)2180-2409 • 팩스 02)2180-2423
- 홈페이지 www.pcic.go.kr

제작유통 || 도서출판 선인

- 전화 02)718-6252
- 팩스 02)718-6253
- E-mail sunin72@chol.com

정가 || 비매품

발간 등록번호 11-1560010-000003-10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 VI

- 주요 친일단체(1920~1937) -



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발간사

옛사람들은 역사를 ‘거울[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책 이름에 ‘감(鑑)’이라는 글자를 붙인 사례가 많았습니다. 중국의 자치통감(資治通鑑)이 그렇고, 우리나라의 동국통감(東國通鑑)과 동국병감(東國兵鑑) 등이 그러한 예입니다. 역사를 거울로 인식하여 후세 사람들의 경계거리가 되기를 기대했던 옛사람들의 생각이나, 지난 세기에 있었던 우리의 부끄러운 역사를 분명히 밝혀 국민 대중과 다음 세대들로 하여금 교훈을 얻도록 하자는 우리 위원회 활동 목적은 서로 그 끈이 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5년 발족된 이래 3년 반 동안 우리 위원회는 일제강점기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에 힘써왔습니다. 그간 우리 위원회는 <일제강점기 반민족행위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에서 제시한 1904년 러일전쟁 개전부터 1945년 8·15해방까지 40년간 행해진 친일반민족행위를 크게 세 시기, 즉 러일전쟁에서 3·1운동까지(1904~1919년)를 제1기, 3·1운동 이후부터 중일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1919~1937년)를 제2기, 중일전쟁부터 8·15해방까지(1937~1945년)를 제3기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조사해왔습니다.

그러나 1949년 반민특위가 좌절된 후 60년이란 세월이 흘러가 버린 터여서 우리는 일제강점기의 자료를 수집하는 일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집된 자료를 검토하고 친일반민족행위를 찾아내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심의자료를 작성하기까지의 과정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누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인지를 가려내기 위해 기준을 만들고, 반민족행위의 경중을 가려서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나아가 그의 친일반민족행위를 최종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은 수많은 논의와 고민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작업을 거쳐 작년과 재작년에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제1기와 제2기에 대한 조사 결과와 그동안 확정된 301명의 친일반민족행위결정서를 수록하여 조사보고서를 출간한 바 있으며, 또한 제1기 조사 과정에 참조했던 사료들을 묶어 두 권의 사료집도 발간했습니다.

올해는 제3기 친일반민족행위의 조사에 힘써서 대체로 금년 말까지 조사대상자 선정을 매듭짓고, 내년에는 우리 위원회의 계획대로 진상규명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작년에 이어 제2기에 해당하는 1919년 3·1운동 이후부터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시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활용했던 사료를 중심으로 모두 5권의 사료집을 발간합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사료집의 첫 번째 책(제3권)에는 조선총독의 훈시(訓示)와 유고(諭告), 치안유지법령, 주요 경제기구와 제도, 조선교육령과 시학관제도, 언론계의 상황과 매일신보의 주요 논설, 사이토 총독에게 보낸 조선인의 서간 등을 수록했습니다. 제4권에는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았던 ‘조선귀족’의 약력 자료와 관련 단체, 조선총독의 자문기구였던 총독부 중추원의 회의 자료를 담았습니다. 제5권에는 일제가 편찬했던 조선반도사 원고 일부, 조선사편찬위원회와 조선사편수회 관련 자료를 넣었습니다. 제6권에는 3·1운동 이후 일제가 실시한 민족분열정책의 일환인 친일파 양성책에 놀아난 국민협회·동민회·대정친목회 등 주요 친일단체들을 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권에는 중국·일본·러시아 연해주 지역 등 해외 조선인 사회의 친일 단체와 인물에 대한 자료를 묶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지난 세기 민족의 과거 속에서 아직도 청산되지 못한 채 남아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기억을 되찾으려 노력하는 이유는, 우리 민족 모두가 겪은 뼈아픈 역사적 경험을 교훈으로 남겨 정의로운 미래 사회의 윤리적 규범으로 삼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이 다섯 권의 사료집은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는 거울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2008년 11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성 대 경**

◆ 일 러 두 기 ◆

1. 이 책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연구 과정에서 취합된 전체 사료 중에서 학술적·교육적 가치가 크거나 특별한 중요성 또는 희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료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2. 이 책에 수록된 사료는 현대어로 번역하거나 풀어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인명, 지명 등의 고유명사 혹은 특정 한자어 등 원 상태로만 의미가 분명하게 전달되는 단어는 한자나 원어를 () 속에 병기하였다. 풀어 쓴 단어, 외국인명의 원음 표기, 필명이나 창씨개명의 본명 등의 경우에도 ()로 병기하였다.
3. 사료의 특정 부분의 해석이 필요하거나 역사적 배경 등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각주를 달았다. 이 책에 수록된 모든 각주는 ‘번역자 주’나 ‘편집자 주’에 해당됨을 밝혀둔다.
4. 이 책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나 용어의 표기법은, 사료집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가급적 원 사료의 표기를 따르고자 했다. 특히 친일적인 인사들이나 단체에서 나온 글의 경우, 그 ‘친일성’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그대로 두었다. 예를 들어 천황, 내지, 반도, 지나, 국어 등이다.
다만, 일제 당국이나 일본인이 주변민족을 비하하고 자민족을 격상시키려는 의도로 사용했을 경우는 오늘날 사용되는 용어로 변경하였다. 예를 들어 일본국왕, 일본, 조선, 중국, 일본어 등이다.
5. 장·절 등을 구성하고 있는 제목의 경우, 가급적 원 사료의 제목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원 제목이 그 의미를 집약해서 드러내지 못하거나 신문기사 등 여러 개의 관련사료를 동시에 묶어 수록할 경우 적절한 제목을 붙이기도 했다.
6. 이 책에 수록된 ‘해제’의 역사용어나 개념, 서술내용 중 일부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및 특별법의 취지와 다를 수 있음을 밝혀둔다.
7. 이 책의 말미에 있는 ‘찾아보기’는 인명, 단체 및 기관명, 사건명을 기본으로 하였다.

* 발간사 4
 * 해제 : 일제의 민족분열정책을 이끌어간 조선인 친일단체 13

I. 국민협회(國民協會)

1. 현황과 운동 37
 1) 국민협회 회장 민원식(閔元植) 탄원서 37
 2) 『국민협회사』(1921) 42
 3) 국민협회 소식 72
 4) 국민협회 회계 보고(1925) 79
 5) 국민협회 정기대회 상황(1927년 2월) 80
 6) 국민협회 회칙(1928년 5월) 83
 7) 국민협회 정기대회 상황(1929년 2월) 84
 8) 『국민협회운동사』(1931) 88
 9) 친일업(親日業) 11단체의 소위 간부간담회(기사) 144
 10) 조선 참정권 부여에 관한 청원서(김명준 외 13명, 1933) 144
 11) 조선에 중의원의원선거법 시행의 청원(김명준 외 13명, 1934) 147
 12) 조선 참정권 시행에 관한 청원서(김명준 이하 1,214명, 1935) 150
 13) 중의원의원선거법을 조선에 시행하는 청원서 등(김명준 외 41명, 1939) 152
 14) 조선에 중의원의원선거법을 시행하는 청원서(전부일 외 56명, 1940) 156
 15) 국민협회 본부 동정에 관한 건(1940) 161
 16) 조선에 중의원의원선거법을 시행하는 청원서(김명준 외 68명, 1941) 164
 17) 국민협회의 참정권 청원운동 정황(1938) 169
 18) 조선에 중의원의원선거법 시행에 관한 청원 연혁 170

2. 사상과 논리 172

- 1) 고희준(高羲駿), 신일본주의(新日本主義)를 고조함(1) 172
- 2) 민원식(閔元植), 신일본주의 선전 175
- 3) 조선의 난국 대응책, 통치의 근본 결함, 부산에서 하마다(濱田) 대의사(代議士) 답(談) 178
- 4) 김상회(金尙會), 조선통치에 관한 사건(1~3) 180
- 5) 김상회, 문화정치의 근본정신 205
- 6) 김상회, 이와 같이 하여 우리 사회를 부활하라 211
- 7) 김환(金丸), 조선시국사관(1, 2, 3, 5, 7, 8) 221
- 8) 김환, 내지연장주의(內地延長主義)를 확립하자(1~3) 302
- 9) 고희준, 나의 신국가관(1~3) 306
- 10) 고희준, 관동지방 진재(震災)에 대한 감상 346
- 11) 김의용(金義用), 참정권에 대한 우리의 의식 349
- 12) 김의용, 정치적 신앙의 파악 353
- 13) 김아연(金阿然), 조선에 참정권을 부여하라 359

II. 동민회(同民會)

1. 목적과 취지 369

- 1) 동민회 창립총회 및 발회식의 상황에 관한 건 369
- 2) 동민회 창립취지, 강령, 규약 374
- 3) 동민회의 근본정신 377
- 4) 동민회 발기의 동기 394
- 5) 이병렬(李炳烈), 동민회의 사명 394
- 6)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건 395
- 7) 동민회 강령(1940) 406

2. 주장과 활동 407

- 1) 최정호(崔定浩), 내선용화론(1~2) 407
- 2) 이승현(李升鉉), 일선용화는 실행방법 여하에 달려있다 415
- 3) 이상하(李相夏), 마츠나미(松波) 씨의 『내선용화요체(內鮮融和要諦)』를 읽고서 416
- 4) 이태성(李泰聖), 내선용화를 하와이(布哇)에 선전하다 417

- 5) 척식성관제반대기성회 타합회에 관한 건 420
- 6) 척식성관제반대 6단체 협의회에 관한 건 422
- 7) 척식성관제반대운동에 관한 건 428
- 8) 최헌식(崔憲軾), 사이토 총독을 맞이하며 429
- 9) 조병상(曹秉相), 신일본의 20년을 맞이하며 430
- 10) 이동화(李東華),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에 맺어진 미담 434
- 11) 박영철(朴榮喆), 일본을 여행하고 436
- 12) 시국대책조선대회(기사) 438
- 13) 시국대책조선대회 결의문(기사) 438

Ⅲ. 대정친목회(大正親睦會)

1. 조직 설립 관련 기사 443
2. 대정친목회의 발기에 대하여, 자작 조중응 씨 담(談) 446
3. 대정친목회의 명(名)과 실(實)(경성소언) 448
4. 법인 설립 관련 관보 게시 449
5. 대정친목회에 관한 개요 자료 450
6. 사업 및 활동 관련 기사 453
7. 조선민사령 개정에 대한 부민 감상에 관한 건 463

Ⅳ. 갑자구락부(甲子俱樂部)

1. 갑자구락부 창설 및 선언서 배포에 관한 건 467
2. 갑자구락부 위원회의 건 473
3. 갑자구락부 총회 개최의 건 474
4. 갑자구락부 총회 개최에 관한 건 476
5. 갑자구락부 간사회 개최에 관한 건 478
6. 갑자구락부 총회에 관한 건 480
7. 갑자구락부에 관한 건 481
8. 갑자구락부 정례 간사회에 관한 건 483
9. 갑자구락부 주최 전선시국대회(全鮮時局大會)(기사) 484

- 10. 중·일 충돌사건에 관한 관내 상황(제1~3, 5~7, 9~12보) 485
- 11. 갑자구락부의 활동 499
- 12. 갑자구락부의 정치운동 501
- 13. 갑자구락부의 대(對) 영국 시국대회의 개최 502
- 14. 갑자구락부(개요표) 503
- 15. 조선민사령 개정에 대한 부민 감상에 관한 건 504

V. 각파유지연맹(各派有志聯盟)

- 1. 대동연맹회 발회식에 관한 건 509
- 2. 대동단결 각파유지연맹 선언식 거행 정황의 건 513
- 3. 대동연맹회 강연회에 관한 건 516
- 4. 소위 각파유지연맹에 대하여(사설) 517
- 5. '동아일보사 간부 및 탈회자 폭행사건' 관련 기사 519
- 6. 민중대회 관련 기사 527
- 7. 주지 선전 강연회 내용(기사) 528
- 8. 소위 각파연맹의 주지에 대하여, 그 선전강연회의 개최를 듣고(사설) 530

VI. 시국대동단(時局大同團)

- 1. 창피 막심한 보천교(普天敎)의 말로 535
- 2. 설립 관련 기사 541
- 3. 각지 선전강연 및 성토 관련 기사 542
- 4. 민족적 백의(白蟻), 그 잠식력을 주의하라(사설) 559
- 5. 차경석(車京錫), 장발적(長髮賊)의 최후 준동(蠢動) 561
- 6. 만주 상조권(商租權) 문제 관련 선언서·결의문·청원서 발표 564

VII. 대동동지회(大東同志會)와 동유회(東維會)

- 1. 설립 및 취지서 569
- 2. 대동동지회 상황보고(제2호) 570
- 3. 평화의 서광은 비취이도다(권두언) 572

- 4. 대동동지회 대(對) 시국성명 각 방면에 타전(打電)하다(기사) 573
- 5. 동유회 574
- 6. 신동아주의를 알리려 동유회 결합 성립(기사) 575
- 7. 동유회의 신사참배 장려운동 기사 577

VIII. 조선신궁봉찬회(朝鮮神宮奉讚會)

- 1. 조선신궁봉찬회 취지서·회칙·사업계획서 581
- 2. 조선신궁봉찬회 창립 590
- 3. 조선신궁봉찬회 창가 당선자 발표 591
- 4. 조선신궁봉찬창가 593
- 5. 조선신궁봉찬회의 상황 594

* 찾아보기 607

해제 :

일제의 민족분열정책을 이끌어간 조선인 친일단체

박수현(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편찬실장)

3·1운동 이후 일제는 이른바 ‘문화정치’를 표방하며 각종 유화책을 실시하는 한편, 친일세력을 이용해 민족분열을 꾀하고자 했다. 조선의 독립 열기를 가라앉히기 위해 겉으로는 다소 완화된 정책을 통해 민심을 달래고 실제로는 광범한 친일세력을 육성, 활용해 민족운동을 억압하고 분열시키고자 한 것이다. 친일세력의 육성과 활용책은 1920년대 조선지배정책의 핵심이었다.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총독은 부임하자마자 광범한 협력 인물의 확보와 활용 방안을 담은 ‘조선민족운동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이러한 구상은 친일세력의 육성을 통한 분할통치와 민족분열정책 없이는 조선지배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그 주요 내용은 각계각층의 친일협력적인 인물을 포섭하여 편의와 원조를 주고, 이들을 앞세워 친일여론 조성, 친일단체 조직, 계층 간의 분열 조장, 민족주의자의 정보 수집과 회유 등을 은밀히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역점을 둔 것은 이들에게 편의와 원조를 주면서 각계각층에 침투시켜 각종 친일단체를 조직케 하는 일이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3·1운동의 좌절 이후 각종 친일단체가 속속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국민협회와 같은 전국적인 정치단체를 비롯해서 특정 계층과 특수 업무를 위한 단체, 지역을 기반으로 한 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많은 친일단체들이 조직되었다. 이 단체들은 겉으로는 자발적 민간 조직의 형태를 띠고 있었으나, 대부분 일제의 지원과 협조로 조직·운영되는 어용단체들이었다. 그 목적 또한 겉으로는 내선융화(內鮮融和), 공존공영(共存共榮) 등을 내걸고 있으나, 실은 친일여론을 확산시키고 민족분열을 획책하는 데 있었다.

1920년대 들어 다수의 친일단체들이 나타나게 된 것은 이러한 일제의 지배정책 때문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친일세력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경제적 이익을 도

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때문이기도 했다. 당시 친일단체에서 활동한 주요 인물의 상당수는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에 민감한 지주, 자본가, 지식인층 등 주로 조선인 사회 내 상층부들이었다. 이들은 이전부터 일본의 조선 지배를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체제 협력을 통해 자신들의 권익을 보장받고자 했지만, 1910년대 무단통치하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었다. 일제는 무단 통치를 통해 조선인의 집회·결사를 비롯한 정치·사회적 활동을 봉쇄한 데다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3·1운동과 일제 통치방식의 변화는 이들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는 계기가 되었다. 3·1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자 이들은 항일독립운동을 반대하는 정치 활동에 나서기 시작했고, 이어 일제가 문화정치를 표방하며 일정하게 집회·결사의 자유를 허용하고 친일단체 조직에 적극적으로 나서자, 능동적으로 일제의 정책에 호응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와 권익을 대변하고 세력화할 수 있는 친일단체 조직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하에서 설립된 친일협력단체들 중 핵심적인 것들을 대상으로 주요한 관련 자료들을 수록한 것이다. 대상 단체는 국민협회(國民協會), 동민회(同民會), 대정친목회(大正親睦會), 갑자구락부(甲子俱樂部), 각파유지연맹(各派有志聯盟), 시국대동단(時局大同團), 대동동지회(大東同志會)와 동유회(東維會), 조선신궁봉찬회(朝鮮神宮奉讚會) 등이다. 이들은 1920~1930년대의 대표적인 친일단체로서 일제 식민통치의 첨병 역할을 한 단체들이고, 또 이 책에 수록된 자료들은 친일세력의 구조나 친일논리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주요 문건들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책은 1920~1930년대 친일단체의 실제 규명은 물론, 친일의 구조나 논리를 파악하는 데도 큰 보탬이 될 것이다.

1. 국민협회(國民協會)

국민협회는 1920~1930년대 친일단체 중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단체로서 그 관련 자료 또한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 따라서 이 책에도 태반의 분량이 국민협회 관련 자료에 할애되어 있다. 이 책에 수록된 국민협회 자료들 중에는 여타 단체들과 협력하여 벌였던 친일적인 정치운동 관련 자료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것은 이러한 운동에서 국민협회가 가장 앞장섰기 때문이기도 하다.

수록 자료는 크게 단체 현황, 사상과 논리 부분으로 구분하였으며, 이 중에서도 단체 현황에 관한 자료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단체 현황에 관한 자료는 국민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자신들의 역사를 정리하여 펴낸 『국민협회사』(1921)와 『국민협회운동사』(1931), 기관지인 『시사평론』, 그 밖에 『사이토 마코토 문서(齊藤實文書)』, 『조선인관계잡건(朝鮮人關係雜件), 건언(建言) 및 진정(陳情) 관계』 등에서 설립배경과 취지, 조직 구성, 활동 양상 등에 관한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국민협회의 모태는 1919년 8월에 결성된 협성구락부(協成俱樂部)였다. 민원식(閔元植), 이동우(李東雨), 김환(金丸), 김태영(金泰榮), 김명준(金明濬), 황석교(黃錫翹), 김석태(金錫泰), 김형복(金亨復), 민석현(閔奭鉉) 등이 중심이 된 협성구락부는 3·1 운동의 원인 제거, 민심 수습, 조선민족의 번영과 행복 도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를 위해 협성구락부는 설립 직후인 1919년 10월 민원식 이름으로 ‘신일본주의’를 선언하였다. 신일본주의는 조선과 일본 양 민족의 합체와 동화공존을 내세우면서 ‘독립불능론’을 강조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다.¹⁾ 협성구락부는 이러한 신일본주의의 선전을 위해 시국강연회를 개최하고, 민원식이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정·관계 유력자를 만나 여론을 조성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1920년 1월 협성구락부는 국민협회로 확대 개편되었다. 정세 변화에 대응하여 보다 규모가 큰 본격적인 정치단체로 개편하여 주의 주장을 관철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이었다. 여기에는 총독부의 지도와 지원이 큰 몫을 했다. 개편 이후 국민협회는 ‘신일본주의’를 보다 더 선명히 하고, 강령으로 ‘시대의 추세에 따른 국민일치 정신의 발양(發揚)’, ‘국민의 자각 호소와 선도’, ‘참정권 행사 촉진’, ‘지방자치 실시 촉진’, ‘교육의 발달과 보급 도모’, ‘산업의 진흥과 부원(富源)의 개발 도모’, ‘노자(勞資)의 조화 도모’, ‘납세의무의 이행’ 등을 내걸었다.

출범 당시 회장은 민원식(閔元植), 총무는 김명준(金明濬)·정병조(鄭丙朝)·황석교(黃錫翹)·권태전(權泰銓), 평의원은 김환(金丸)·이겸제(李謙濟)·한기준(韓基準)·이동우

1) ‘신일본주의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양 민족의 합체와 동화공존은 정말로 하늘의 뜻이고 시세에 순응하는 것이다. 일선 민족이 도리에 따라 일선병합, 즉 양 민족의 합체라는 사실을 존중함으로써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취지를 신일본주의라고 부르고 다음과 같은 주장을 분명히 밝힌다. 조선 민족은 대일본제국의 신민이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합법적 노력으로 민권의 신장을 도모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반국가적 사상을 품거나 혹은 조선의 독립을 계획하는 것은 대의를 어그러뜨리는 명분에 반할 뿐만 아니라, 1천 7백 만의 복지를 저해하는 폭거일 뿐이다. 조선 민족은 국가에 대해 충성을 맹세하고 정당한 노력을 통해 생활을 확충하여 문명국민으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 한다.” (『國民協會史』, 1921)

(李東雨)·김우식(金禹植)·장영한(張永翰)·이영석(李永錫)·문창규(文昌奎)·김형복(金亨復)·양건식(梁建植)·강성구(康星九)·백대진(白大鎭)·박정래(朴廷來)·이교헌(李敎憲)·이수룡(李秀龍) 등이었다. 이후 김명준·윤갑병(尹甲炳)·신석린(申錫麟)·이병렬(李炳烈) 등이 회장을 맡았으며, 김갑순(金甲淳)·엄준원(嚴俊源)·고희준(高羲駿)·정규환(鄭圭煥)·전부일(全富一)·박춘금(朴春琴)·이병학(李炳學)·신석우(申錫雨)·한영원(韓永源)·박봉주(朴鳳柱) 등이 간부로 활동했다. 이들은 대부분 구한말 엘리트 출신, 현직 관료, 지역의 대지주 등 조선인 유력자들이었다. 이렇게 각계 각층의 유력자들이 총망라되면서 그 세력도 크게 확장되어, 출범 당시 100여 명이던 회원이 1921년 7월경에는 6,000여 명, 1923년에는 1만여 명으로 늘어났다.

관련 자료 중에서도 『국민협회운동사』, 『조선인관계잡건, 건언 및 진정 관계』는 국민협회의 대표적인 활동인 ‘참정권 청원운동’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상세한 청원내용과 과정을 담고 있다. 특히 후자의 자료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1930년대 중반 이후 청원운동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참정권 청원운동’은 창립 직후인 1920년 1월 100여 명의 연서로 제1회 청원서를 일본 의회에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1940년대 초까지 계속되었다. 일본의회와 일본정부에 청원한 핵심 내용은 중의원 선거법을 조선에도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청원운동은 거의 매년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제1회 청원서 제출에 이어, 1920년 7월 644명의 연서(連署)로 제2회 청원서, 1921년 2월 3,000여 명의 연서로 제3회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의회에서도 ‘조선에서 의원을 선출할 필요가 있다’고 공식 인정하고, 민원식이 피살된 다음 날인 1921년 2월 17일에 만장일치로 청원서를 의제로 채택하기도 했다. 하지만 구체적 시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 이에 1922년부터는 일본내각을 상대로 ‘건백운동’을 전개하였다. 건백운동은 1922년 3월 8,500여 명이 서명한 건백서를 일본내각에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1930년대 초까지 매년 꾸준히 전개되어 그 횟수가 10여 차례에 달했다. 이어 1933년부터는 다시 일본의회를 상대로 청원운동을 시작하여 1933년 2월 14명의 연서로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일본의회에서는 그 취지를 받아들여 채택하기로 의결했지만, 일본내각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1938년 3월에는 각 도의 도회의원 29명과 국민협회 간부 13명이 연서한 청원서를 박춘금을 통해 일본의회에 제출하였으며, 1939년 1월에는 국민협회 대표를 도쿄에 파견하여 의회에서 청원 내용을 설명하기도 했다. 1941년 2월에도 69명의 연서로 일본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였다.²⁾

2) 그러나 일제는 민도(民度)의 차이를 들어 계속 참정권 실시를 미루었고, 패전(敗戰) 직전인 1945년 4월 11일 조선인과 대만인에게 중의원 선거·피선거권을 부여한다고 발표했으나, 식민통치가

국민협회가 일관되게 참정권을 요구한 것은 조선인도 ‘일본국민’이라는 자각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자체 편찬한 『국민협회사』에 따르면, 조선인들이 병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일본에 반감을 갖고 부화뇌동하는 데는 일본 국민이라는 자각이 없기 때문이며, 조선통치의 근본 방향도 조선인이 일본국민이라는 자각을 갖도록 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 최선의 대책이 참정권 부여라는 것이다.³⁾

또한 『국민협회운동사』에 소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국민협회는 1929년 일본정부가 추진 중이던 ‘척식성(拓殖省) 관제안’에 대해 동민회, 대정친목회, 교육협성회, 갑자구락부 등의 단체와 함께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관제안의 내용은 조선을 비롯한 타이완, 사할린, 관동주, 남양군도의 사무와 이식민의 지도 장려 등의 업무를 척식대신의 관할하에 둔다는 것이었다. 국민협회는 다른 단체와 연합하여 “조선을 척무성 관할에 소속시켜 식민지와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병합의 정신에 반하는 것으로 절대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각계 요로에 발송하고 동시에 ‘척식성 조선제외동맹’을 조직하였다. 또 진정 위원들을 도쿄로 파견하여 신문사, 내각, 추밀원, 정당과 조선인 유력 인사 등을 방문케 하는 등 반대운동에 기세를 올렸다.

하지만 일본정부가 신설하는 척식성에서 조선을 제외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통보하자 이들은 차선택으로 ‘척식성의 명칭을 변경할 것’, ‘관제 내용 중 조선만은 다른 부서를 두어 취급하고 기타는 사무별로 할 것’, ‘관제 발표와 동시에 총리대신은 조선을 식민지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발표할 것’ 등의 세 가지 안을 다나카(田中) 수상에게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다나카 수상은 성명을 통해 ‘척식성 명칭을 척무성(拓務省)으로 변경하고, 척무성에 조선부를 특설하며 조선은 식민지가 아니라는 뜻’을 밝혔다.

끝날 때까지 조선인에 대한 참정권은 부여되지 않았다.

3) “생각건대 일한 양국의 합일은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귀결로 일반 조선인도 양해하고 있는 바이다. 하지만 내심 일본의 치하에 있다는 것을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아 자칫하면 반국가적 언동을 일부러 일삼는 자가 있다. 특히 나이 어린 학생이 이에 뇌동하는 자가 있다는 것은 실로 태평한 세상의 불상사이다. 이는 필경 일본국민이라는 자각이 없기 때문이다.……국민이라는 자각은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비로소 생겨난다. 그런데 조선인은 국민의 중요 권리인 참정권이 없다. 즉 제국의회가 있고 내지에 거주하는 인민은 선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원을 선출하여 국정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에서는 선거법이 시행되지 않고 의원을 선출할 수도 없다. 조선에 관한 사항일지라도 모두 내지 선출의 의원에 의해 결정된다. 다른 말로 한다면 일본제국의 정치는 내지인의 정치로 조선인은 전혀 참가할 수 없다. 우리는 조선인이 국민이라는 자각을 갖지 못하는 원인은 바로 이 점에 있다고 생각한다. 참정권 부여가 가장 급무임과 동시에 하루라도 빨리 부여할 문제이다.” (『國民協會史』, 1921)

한편 국민협회는 이러한 활동 외에도 참정권 청원운동 외에 지방자치제도, 사회사업, 산업정책, 교육제도, 풍속습관, 노자(勞資)문제, 소작제도, 조세문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조사활동을 벌이고 대책을 강구하기도 했다.

다음으로 사상과 논리에 관한 자료는 『매일신보』, 『시사신문』, 『조선사상통신』, 『시사평론』에 게재된 관련 글들을 발췌한 것이다. 수록된 글은 김상회(金尙會)의 「조선통치에 관한 사견(私見)」, 「문화정치의 근본정신, 그것이 실제화될 기조는 무엇?」, 「이와 같이 하여 우리 사회를 부활하라」와 김환(金丸)의 「조선시국사관(朝鮮時局史觀)」, 「내지연장주의(內地延長主義)를 확립하자」, 고희준(高羲駿)의 「나(余)의 신국가관」, 「관동지방 진재(震災)에 대한 감상」, 김의용(金義用)의 「참정권에 대한 우리(吾人)의 의식」, 「정치적 신앙의 파악, 현대 위정자에 대한 요망」, 김아연(金阿然)의 「조선에 참정권을 부여하라」 등이다.

이 글들은 국민협회 세력의 참정권 청원운동의 논리를 비롯한 현실인식을 대변한 것으로서 국민협회의 친일논리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글들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참정권 청원운동의 논리는 일제 지배체제에 절대적으로 순응하고 의존해야 한다는 현실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약육강식의 세계질서 속에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당연한 현상이며, 현실적으로 조선이 택할 수 있는 길은 일본에 의존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 이들의 현실인식이었다. 또한 국민협회 세력은 조선인 개개인의 행복과 생활향상의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강한 국가에 의존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그렇다고 이들이 합병을 숙명적인 상황으로만 인식한 것은 아니다. 이들은 일제에 의한 합병을 강한 국가의 국민으로 살 수 있는 기회로, 일시동인(一視同仁)의 원칙에 따라 양 민족이 공동 번영하는 계기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이 제기한 문제는 통치방식이었다. 합병이 조선인에게 큰 혜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치방식이 잘못되어 일시동인의 원칙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3·1운동이 발생한 것도 이러한 잘못된 통치방식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리하여 일제가 통치방식을 문화정치로 바꾸고 그 틀 속에서 ‘내지연장주의’를 표방하자, 이들은 합병의 근본 취지를 살리고 통치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으로서 참정권 부여를 주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당연히 ‘독립불능론’으로 귀결되었다. 독립이 불가하고 무의미하다는 주장은 대표적 논객인 김상회·김환·고희준 등이 참정권 청원의 근거 이유로서 일관되게 강조하는 부분이었다. 이들은 3·1운동 주도세력이 승전국이 패전국의 권리를 뺏기 위한 민족자결주의를 내세워 무지몽매한 인민을 동원하는 것은 무고한 희생만 치를 뿐

이며, 세계정세가 그들이 인식하는 것처럼 이상적으로 전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세계개조론을 식민지 해방의 논리가 아닌 강대국 내부의 정치질서 변화의 논리로 인식하고 오히려 조선인의 정치적 지위 향상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독립운동은 조선민족의 정치적 또는 사회적 생활 개선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 내지는 최선의 방법도 아니며 행복과 광영을 가져다주는 길도 아니기 때문에, 독립운동보다는 현재의 위치에서 진보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독립이 된다 하더라도 현재의 상황으로는 스스로 독립국가를 유지할 능력도 없어 오히려 유해무익하다고 하였다. 유해무익한 독립보다는 참정권을 속히 획득하여 일본인과 동등한 권리를 향유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논리였다.

이들은 또한 조선인이 일본인과 동등한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참정권만이 유일한 선택이라며, 또 다른 친일세력이 내세우던 대안인 '자치제'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지녔다. 이들은 자치라 할지라도 사실상 독립국가에 준하는 실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독립이 불가능하면 자치도 불가능하다며, 자치제 주장은 실상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더구나 조선은 자치제를 소화할 능력도 없다고 하였다. 이들이 이러한 인식을 갖게 된 데에는 그들의 계급적 기반과 현실상황에 대한 판단이 크게 작용하였다. 국민협회 세력은 대개 자산가, 지주층으로서 경제적 부는 가지고 있지만 정치적 입지와 기반은 약한 자들이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조선사회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힘든 그들로서는 자치제는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 정치적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이들이 일본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자신들의 계급적 성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적 지위를 확보하는 최선의 길이 바로 참정권 획득이었다.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국민협회는 1920년대에 참정권 청원운동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1930년대 이후 조선총독부의 친일단체에 대한 정책 변화, 만성적 재정 적자, 정세 변화에 따른 영향력 감소 등으로 점차 세력이 약화되면서 점차 명맥만 유지하는 단체가 되어 갔다.

2. 동민회(同民會)

동민회는 1924년 4월 조선인과 일본인 유력자들이 내선융화를 표방하며 결성한 친일 단체로서, 국민협회와 더불어 1920~1930년대 대표적인 친일단체이다. 1940년대 초까지

존속했지만⁴⁾ 활동이 활발했던 시기는 1920년대였다. 이 책에 수록된 자료는 창립배경과 취지, 조직 구성, 현황과 활동, 주장과 논리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들로서 상당수는 기관지 『동민』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 밖에 『사이토 마코토 문서(齊藤實文書)』, 『매일신보』와 기타 조선총독부 경무국 등에서 나온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동민회의 창립배경과 취지, 강령, 초기의 조직과 활동에 대해서는 「동민회 창립 총회 및 발회식의 상황에 관한 건」과 『동민』 창간호에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창립식은 1924년 4월 15일 경성공회당에서 ‘아시아 민족의 결합, 내선융화, 사상 선도’ 등을 창립목적으로 내걸고 280명의 정·관계, 재계 등 유력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창립취지는 “안으로는 내선융화가 정착되지 않고 밖으로는 과격한 사상이 유입되어 조선인과 일본인이 서로 대립하고 민심이 피폐해지고 있는 현실에 즈음하여, 서로 단결하고 근면 성실한 습관을 키워 국가의 백년대계를 세우자는 것”⁵⁾이었다.

동민회 창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일본 재계의 거물들이었다. 이들은 관동대지진 이후 반일감정이 격화되고 여기에 사회주의사상의 확산으로 통치체제가 불안해지자, 조선인 유력자들과 연합하여 민심을 수습하고 지배질서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 동민회를 창립하였다. 조선인 유력자 또한 대개 대지주·자산가 등 재계 인물이 주축을 이루었다. 출범 당시의 조선인 임원을 살펴보면, 이재극(李載克), 이완용(李完用), 박영효(朴泳孝), 송병준(宋秉峻), 유맹(劉猛), 조진태(趙鎭泰), 신석린(申錫麟), 이병렬(李炳烈), 방규환(方奎煥), 이범승(李範昇), 유전(劉銓), 조병상(曹秉相), 원덕상(元惠常), 이진호(李軫鎬), 전성욱(全聖旭), 이승현(李升鉉), 한상룡(韓相龍), 김영한(金榮漢), 장도(張燾), 신응희(申應熙), 장두현(張斗鉉), 박승직(朴承稷), 김한목(金漢睦), 민대식(閔大植), 김한규(金漢奎), 유일선(柳一宣), 유해중(劉海鐘), 채기두(蔡基斗), 고희준(高羲駿), 어윤적(魚允迪), 현동

4) 동민회는 1940년대 초 국민총력조선연맹에 흡수되었다.

5) 「동민회 창립취지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반도에 거주하는 자는 동문동종(同文同種)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모두 일본국민이다. 일본 국민으로서의 광영(光榮)을 같이하고 또 일본국민으로서의 책임을 같이해야 한다. 그런데 안으로는 융화의 열매가 아직 온전하지 않아서 걸핏하면 공연히 감정에 치달아 서로 반목질시하는 경향이 있다. 밖으로는 과격하며 천박한 사상이 팽배하여 장차 우리의 지순한 동양사조(東洋思潮)를 좀먹으려 하고 있다. 이에 그 결합을 견고히 하고, 서로 힘써 도우며 근면노력의 풍습과 강건성실(剛健誠實)의 기상을 양성하여 백년대계를 수립하는 것이 오늘날의 급무이다. 하물며 지난번 관동지방에서 일어난 미증유의 큰 재해는 실로 우리 국민의 큰 시련이다. 모든 과거의 미상(迷想)을 일소하고 새로운 의기(意氣)와 용맹한 노력을 경주하고 개조부흥에 노력해야 하는 오늘날, 비록 불민(不敏)하지만 이에 느끼는 바가 있어 유력한 여러 군자(君子)의 지도를 얻어 동민회를 창립(한다).” (「同民會創立總會發會式ノ狀況ニ關スル件」, 1924.4.25)

익(玄東翊), 박동규(朴東奎), 오태환(吳台煥), 이원석(李元錫) 등 주로 재계의 거물들이었다. 재계 인물이 대거 참여한 이유는 사회주의운동의 확산과 급증하는 농민·노동운동에 대처하고 총독부의 산업정책에 적극 호응하기 위한 재계의 공동대응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그 대응의 내용은 ‘교화와 사상 선도’로 압축될 수 있다.

동민회는 강령을 통해서도 내선융화를 중심으로 사회 교화와 사상 선도에 나설 것을 분명히 강조하였다.⁶⁾ 또한 창립 당시 막후에서 큰 역할을 했던 다카시마 헤이사부로(高島平三郎)는 『동민』 창간호에 실린 「동민회의 근본정신」에서 사상 선도의 중요성을 피력하면서, 한걸음 더 나아가 동민회는 국가를 주체로 한 단체이며 그 근본정신은 국가에 최선을 다하는 국민정신임을 강조했다. 다카시마 헤이사부로는 일본의 황민회(皇民會) 간부로서 조선과 일본에서 사상 선도에 관한 많은 강연을 한 인물이었다.

이러한 취지와 강령을 바탕으로 동민회는 강연회·강습회·좌담회·전람회·활동사진회 개최, 회보 및 기타 간행물 발행, ‘내선만지(內鮮滿支)⁷⁾ 사정’의 소개와 선전, 국방사상 및 방공(防共)·방로(防露) 지식의 철저한 보급, 미풍양속·사회개선에 관한 방법의 강구 실시, 관혼상제 기타 생활개선에 관한 지도 장려, 내선일체에 관한 공로 또는 업적 있는 자의 표창, 회와 취지를 함께 하는 각종단체와의 연락협조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동민회 역시 국민협회와 마찬가지로 1920년대 후반에 일본정부의 ‘척식성(拓殖省) 관제안’에 대한 반대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대한 것은 경성본정(本町)경찰서에서 나온 「척식성관제반대기성회 타합회(打合會)」에 관한 건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동민회는 국민협회·대정친목회·교육협성회·갑자구락부 등의 단체와 함께 ‘척식성조선제외동맹’을 결성하고 “척식성이 아니라 척무성이라는 명칭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선을 척식성에 속하게 하여 식민지와 동일한 취급을 하는 것은 병합의 정신에 반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건」에 첨부되어 있는 「동민회 회보」는 1930년대 후반의 동민회 활동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이에 따르면 동민회는 주요 활동으로서 선도 대상을 청소년에게까지 확대하여 1930년대 후반까지 매년 강의록을 발행하여 배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강의록은 보통학교 5·6학년용 강의록과 고등보통학교

6) “아시아 민족 결합의 기조로서 내선융화의 철저한 실행을 기한다. 실질강건(實質剛健)의 기풍을 양성하고, 경조부박(輕佻浮薄)의 사조를 배척한다. 근면역행(勤勉力行)의 풍습을 일으키고, 방종타약(放縱惰弱)의 폐단을 경계한다.” (위의 자료)

7) 조선, 일본, 만주, 중국을 말함.

용 강의록 두 종류였는데, 전자는 보통학교 4학년까지 수료하고 가정이나 기타 사정 때문에 5·6학년에 진급할 수 없는 학생을 위한 것이었고, 후자는 보통학교 교육을 수료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없는 학생을 위한 것이다. 1926년부터 1938년까지 배포된 부수는 총 16만 2,210권에 달했다.

이와 함께 동민회는 중일전쟁이 발발 이후 각종 강연회와 행사 등을 통해 부인의 시국인식 강화와 충후보국 실천에 주력하였다. 1938년 4~5월에는 ‘시국의 중대성 인식과 충후의 적성(赤誠)을 실현하자’는 취지로 경성의 각 학교에서 부인들을 대상으로 ‘충후보국 부인강연회’를 개최하였으며, 이어 8월에는 휘문중학교에서 총독부의 지원하에 ‘동민부인 하계 대강연회’를 열었다. 강사로는 신석린(申錫麟), 한규복(韓圭復), 김복인(金福仁), 이대영(李大永), 이숙중(李淑鍾), 김대우(金大羽) 등이 참여하였다. 또한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 ‘경제전(經濟戰) 강조 주간’에 발맞추어 가정의 부인들에게 물자절약과 근검저축을 권장하는 ‘경제전 강조 강연회’를 각 학교에서 열었다. 여기에 동원된 청강자 수는 총 3,850명이었으며, 강사는 한규복, 고영균(高永均), 조병렬(趙炳烈), 장홍식(張弘植), 박노일(朴魯一), 남궁영(南宮營), 양재창(梁在昶), 황우찬(黃祐燦), 양재창(梁在昶) 등이었다. 이외에도 소규모 가정강습회 개최, 국방헌금 모금, 「일본부인의 부도(婦道)나 「비상시국과 생활」 등의 팜플릿 제작 등 일제의 총동원체제에 적극 호응하는 각종 활동을 벌였다.

이 책에 수록된 동민회의 주의 주장과 친일논리에 관한 자료는 대부분 기관지 『동민』에서 발췌한 글들이다. 수록 자료는 최정호(崔定浩)의 「내선용화론」, 이승현(李升鉉)의 「일선용화는 실행방법 여하에 달려있다」, 이상하(李相夏)의 「마즈나미(松波) 씨의 『내선용화요체』를 읽고서」, 이태성(李泰聖)의 「내선용화를 하와이(布哇)에 선전하다」, 최헌식(崔憲軾)의 「사이토 총독을 맞이하며」, 조병상(曹秉相)의 「신일본의 20년을 맞이하며」, 이동화(李東華)의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에 맺어진 미담」, 박영철(朴榮喆)의 「일본을 여행하고」 등이다.

대부분 내선용화를 강조한 글들로서 필자들이 주장하는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최정호는 “내선용화는 시정의 근본적 개혁과 함께 먼저 일본인의 반성과 실행을 통해 조선인의 의혹을 해소하고 속마음을 헤아려 장단점을 서로 보완해야하며, 상호간의 이해와 온정이 있어야 비로소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승현은 “많은 주장과 광범한 선전에도 불구하고 내선용화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구체적 실행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혼인의 공통에 의한 민족·가정적 결합, 학교 공학에 의한 정신·지식적 결합, 사업의 공영에 의한 재정·경제적 결합” 등을 제시했다. 또 최헌식은 “일한병합의 정신은 동양평화를 위해, 아니 양 민족의 행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정신을

망각하여 감정에 흐르고 편견에 사로잡히는 것은 정말로 불행이다. 제일선에 서있는 우리는 어디까지나 어려움을 헤치고 내선 양 민족의 융합과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조병상은 일본과 조선과의 관계는 다른 열강과 같이 본국과 식민지 관계가 아닌 동양평화를 위한 ‘일한병합’ 정신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조선인의 진정한 민족애(民族愛)는 일본 그 자체를 조선인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⁸⁾

3. 대정친목회(大正親睦會)

대정친목회는 1916년 11월 자작 조중응(趙重應)의 주창으로 조선인 전직 관료·귀족·대지주·실업가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조선인의 단체활동이 거의 불가능했던 3·1운동 이전 조선인 단체로는 종교단체 이외에 대정실업친목회가 거의 유일했다.

이 책에 수록된 대정친목회 관련 자료는 대부분 『매일신보』와 『경성일보』의 관련 기사와 논설 등이다. 친목단체라는 특성상 단체의 활동이나 논리보다는 단체 동향, 즉 조직의 구성이나 변화에 관한 내용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설립 당시 대정친목회는 국가경축일과 경성 번영에 관한 일, 경제 및 근검저축과 식산 흥업에 관한 일, 법령을 주지시키고 납세의무·위생근행(衛生勤行)에 관한 일, 예의질서 공사도덕에 관한 일, 풍속교정 및 내선인 융합 일치에 관한 일’ 등을 연구사항으로 두긴 했으나, 실제로는 내선융화를 위한 친목사교단체의 성격이 더 강했다. 설립 당시 주요

8) “민족애(民族愛)에서 출발한 즉 조선인의 앞으로의 행복을 목표로 한 민족운동이라면, 불합리 불가능 불이익인 조선의 독립을 도모하기보다는 일본 그 자체를 조선인이 자신의 것으로 하겠다는 결심을 통해 그 실행방법을 찾는 것이 최선이고 이익이자 행복이다. 따라서 이러한 운동은 정말로 민족애이어야 한다. 현재 일본의 세계적 지위, 일본의 국체(國體) 및 국가의 힘을 조선인이 자신의 것으로 삼아 세계에서 활약할 수 있다면, 그때야말로 비로소 약소계(弱小界)에서 용출하여 세계 열강인이 됨과 동시에 동양평화의 주인이 되어 세계의 번민(煩悶) 민족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현재 일본의 세계적 지위와 일본의 모든 무대를 조선인이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지의 여부가말로 조선인의 비할 바 없는 중대 문제이자 2천만 민중의 운명을 판단하는 분기점이다. 이것이야말로 조선인이 진정한 민족애의 열기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일본과 조선의 병합은 다른 세계열강과 같이 본국과 식민지의 관계가 아니다. 구주 각국이 식민지를 갖는 것은 본국의 발전을 위해서 식민지적으로 이용하는 것이지만, 일한병합은 결코 것처럼 침략적이거나 식민지적이 아니라 완전한 동양평화를 위한 것이다.” (曹秉相, 「新日本の二十年を迎ふに際して」, 『同民』 52호, 1929.1)

인물은 회장 조중응 외에 예종석(芮宗錫), 유해중(劉海鍾), 홍충현(洪忠鉉), 최강(崔岡), 김린(金麟), 방태영(方台榮), 사일환(史一煥), 안순환(安淳煥), 한상룡(韓相龍), 박제빈(朴齊斌), 박완혁(白完赫), 김중환(金重煥), 김용제(金鎔濟), 정구창(鄭求昌), 주성근(朱性根), 김한규(金漢奎), 유동필(劉秉珽), 김성기(金性璡), 민유식(閔裕植), 안상호(安商浩), 선우일(鮮于日), 박승기(朴承夔), 이강혁(李康赫)⁹⁾, 엄주익(嚴柱益), 최진(崔鎭), 윤치호(尹致昊), 백형수(白溼洙) 등이었다.

이후 3·1운동과 조중응 사망 등으로 인해 명맥만 유지하다가 1920년대 초반에 활동 방향과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기 시작하였다. 1921년 1월 주요 간부들이 모여 앞으로의 발전방향과 활동방향을 논의한 결과, 조직의 발전과 내선용화의 실천을 위해서는 그동안 조선인만의 단체에서 벗어나 일본인도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주요 인물을 고문으로 둔다는 결정을 했다. 강령도 새롭게 채택하여 “실력양성을 주창하고 내선인의 용화를 도모하여 동양 전 민족의 번영과 강녕을 기함”을 목적으로 내걸고, “내선인이 상호 친목하여 덕업을 상려(相勵)하고 환난을 상구(相救)할 것, 산업발달 증식에 노력하여 생활을 안고(安固) 건전케 할 것, 교육보급에 노력하고 문화향상에 공헌할 것” 등을 내걸었다. 이에 대해 『매일신보』 사설은 대정친목회가 내선용화의 측면에서 진보를 이루었다고 평가했다. 조선의 처지와 실력을 진정으로 이해하면서 내선용화를 지금까지 일본인들이 주창한 것과 달리 조선인이 일본인에게 제창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임원진도 새롭게 정비하였다. 개편된 임원 중 조선인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 장 : 민영기(閔泳綺)

부회장 : 조진태(趙鎭泰)

고 문 : 이완용(李完用), 민영휘(閔泳徽), 이윤용(李允用)

이 사 : 사일환(史一煥), 주성근(朱性根), 최강(崔岡), 백형수(白溼洙), 홍은주(洪殷柱), 유해중(劉海鍾), 김용태(金溶泰), 유문환(劉文煥), 방태영(方台榮), 장홍식(張弘植), 이강혁(李康赫), 권병하(權丙夏), 전성욱(全聖旭)

평의원 : 백완혁(白完赫), 조대호(趙大鎬), 엄주익(嚴柱益), 윤치호(尹致昊), 조병택(趙秉澤), 홍충현(洪忠鉉), 김한규(金漢奎), 장도(張燾), 유병필(劉秉珽), 안순환(安淳煥), 석진형(石鎭衡), 안영기(安永基), 원덕상(元惠常), 최사영(崔思永), 한상룡(韓龍植), 고윤묵(高允默), 김동완(金東完), 한익교(韓翼敎), 김용집(金用集), 백시용(白時鏞), 고응원(高應源), 백윤수(白潤洙), 천영기(千英基), 신승

9) 원문에는 이동혁(李東赫)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이강혁(李康赫)의 오키로 보여 바로잡음.

균(申昇均), 김성기(金性璣), 박승기(朴承夔), 김영두(金永斗), 김진옥(金鎭玉), 구자욱(具滋旭), 김문환(金文煥)

하지만 대정친목회는 회관 설립 추진이 재정 문제로 중단되고 회장의 진퇴 문제 등 내부 갈등을 겪으면서 활동이 부진해졌다. 만주동포 구제책 외에는 특별한 대외 활동이 없었다. 조직을 쇄신하기 위해 1922년 11월 사단법인으로 변경하기도 했으나 그 효과는 크지 않았다. 이후 1929년 국민협회·동민회·교육협성회·갑자구락부 등과 함께 일본 정부의 '척식성 관제안' 반대운동을 벌이기도 했으나, 그 외의 두드러진 활동은 드러나지 않은 채 명맥만을 유지했던 듯하다.

4. 갑자구락부(甲子俱樂部)

갑자구락부는 1924년 8월 조선인과 일본인이 합작하여 조직한 정치운동단체로서 주요 활동은 참정권 청원운동이었다. 갑자구락부의 참정권 청원운동은 국민협회의 활동과 상당 부분 중복되었으나, 조선 내 일본인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대변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 책에 수록된 자료는 창립 이후부터 1930년대 후반까지 조선총독부 경무국 등에서 파악한 갑자구락부의 동정에 관한 문서들인데, 대부분은 활동이 활발했던 1920년대 중반부터 1930년대 초반까지의 자료들이다.

창립 당시의 상황을 비롯한 1930년대 초반까지의 활동은 「갑자구락부 창설 및 선언서 배포에 관한 건」, 「갑자구락부 위원회의 건」, 「갑자구락부 간사회 개최에 관한 건」, 「갑자구락부 총회의 건」 등 조선총독부 경무국과 경성본정(本町)경찰서 문건 등에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창립 동기는 1924년 6월에 경성에서 개최된 '전선(全鮮) 공직자 연합간담회' 결의사항인 참정권 청원 등을 진정하기 위해 도쿄에 갔던 경성상업회의소의 와타나베(渡邊定一郎) 등 3명이 귀환한 뒤, 앞으로 정치 현안에 대해 연구하고 건의할 상설 운동단체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경성 거주 공직자와 유지 약 40명이 조직하였다. 그러나 갑자구락부를 조직하려는 움직임은 1923년 10월 경성에서 열린 시민대회에서부터 비롯되었다. 당시 시민대회는 관동대지진 이후 일본정부의 재정 긴축에 반대하는 집회로서 병합 이후 최초의 정치적 집회였다. 또 그 결의사항을 진정하고자 도쿄에 진정위원을 파견하기도 했다.

창립 목적은 조선 통치와 관련하여 관민 공동의 책임을 자각하고, 나아가 조선에서의

시무(時務)를 조사 연구하여 이를 총독부에 건의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창립선언서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합병 초기에는 총독정치에 의존했지만 정세가 바뀌고 민간의 자각 또한 높아졌기 때문에 총독정치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정치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¹⁰⁾ 하지만 갑자구락부의 정치적 입장은 조선 내 일본인의 정치적 입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었다.¹¹⁾

이러한 입장에서 갑자구락부는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진정 또는 청원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창립 직후인 1924년 9월에는 총독부 예산 절감 방안에 대해 “내지인 관리의 가봉(加俸)을 삭제할 것, 도청·군아(郡衙)를 폐합할 것, 중추원을 폐지할 것, 자치제를 시행할 것, 관리의 여비를 감액할 것, 홍삼사업을 개방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민간에게 불하할 것, 보류 광구(鑛口)를 개방하여 대자본가를 유치할 것, 영림창(營林廠)을 폐지하고 사업을 민간에게 이전할 것, 사회교화사업을 해당 회사로 이전할 것, 잡지 『조선』을 폐간할 것, 관리 수를 감소할 것” 등 11개 항목의 진언서(進言書)를 총독부에 제출했다. 1924년 11월에는 송달섭(宋達燮), 조병상(曹秉相), 예종석(芮宗錫) 등 조선인 3명과 일본인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개최하고 ‘조선철도의 철도성 이관 반대, 귀족원령 및 중의원선거법의 개정, 조선의 체신사무의 체신성 이관’ 등을 결의하고 총독부에 진정했다. 1925년 2월과 1926년 1월에는 일본의회에 귀족원령 및 중의원선거법 개

10) “합병 초기에 새로운 국민의 적종(適從)을 모르고 인심의 변화를 예측할 수 없을 때에는 총독 독재의 시정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권의(權宜)이지 결코 통치의 상도(常道)가 아니다. 지금은 시세의 추이가 바뀌었고 민간의 자각 또한 당시에 비할 바가 아니다. 천하를 경청하고 민의를 존중하여 시책을 펼쳐야 한다. 조선은 이미 제국의 판도에 들어갔고 1,700만 동포는 제국신민이 되었다. 그런데 오늘날 여전히 헌법상의 보장이 균점되지 않은 현재의 상황을 이대로 방임한다면, 이는 후일 결렬의 단초가 될지 모른다. 현재 우리는 이러한 중대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무관심한 태도로 우리 총독정치를 내버려둘 수 없다. 정치를 논하는 것 또한 우리의 임무이기도 하다. 관민 공동의 책임을 자각하고 나아가 조선의 시무를 조사 연구하여 그 결론을 얻어 당로(當路)에 진언하고 현책하고자 한다.” (『甲子俱樂部創設宣言書配布ニ關スル件』, 1924.9.25)

11) 즉 이들의 참정권 청원 활동은 ‘내선(內鮮)의 상호이해와 접촉’을 도모하여 조선의 독립운동을 마비시키는 ‘사상의 안전판’을 만들고, 또한 조선에 사는 일본인의 정치적 위상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들이 주장한 참정권은 보통선거가 아니라 일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경성, 부산, 대구, 평양에서만 이루어지고 유권자의 범위를 극히 제한하는 선거를 실시하자는 내용이였다. 그리하여 자치론에 대해서도 조선자치가 독립의 전제가 된다는 이유에서 강력하게 반대했다. 어디까지나 내지연장주의에 입각하여 일본 국회에 조선 내 일본인이 중심이 되고 극소수의 조선인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족문제연구소, 『일제협력단체사건』(국내중앙편), 2004, 237~238쪽)

정을 청원했다.

이어 1926년 6월에는 임시대회를 개최하여 참정권 청원과 관련하여 3개항을 총독부에 진언하였다.¹²⁾ 그 내용은 “(1) 귀족원령을 개정하여 조선귀족에게 내지 화족(華族)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할 것, 조선 재주자 중 내지와 동일한 자격에 따라 귀족원 의원 직선의 길을 열어줄 것, (2) 중의원의원선거법 중에 경성부·부산부·대구부·평양부를 더하고, 의원 수는 내지인의 비례에 따라 이를 정할 것, 별도로 피선거의 자격 및 선거방법 등은 조선의 사정에 적합한 법규를 정할 것, (3) 조선의 구관(舊慣)에 준거한 지방부락의 자치제도를 정하여 공동 작업을 장려하고 공존공영의 기초를 확립함과 동시에 산업을 발전시켜 국정 참여의 의의를 자각시킬 것” 등이었다.

1930년 2월에는 광주학생운동의 원인과 대책을 비롯한 교육개혁 결의안을 내놓았다. 학생사건의 원인을 ‘교육에 대한 당국자의 통치방침 결함, 한글신문의 정책적 선전, 교육의 소질 부족’ 등으로 보고, 그 대책으로 “당국은 일정한 교육방침에 의거하여 학교당국자에게 학칙을 엄수하도록 하고, 만약 위반자가 생겼을 때에는 그 직원과 학생을 불문하고 지극히 엄정하고 명확한 방법에 따라 곧바로 처단할 필요가 있다”고 결의하였다. 이와 함께 교육개혁책으로 “현재 중등학교 교육을 축소하고, 국민의 실생활에 직접 필요한 실업교육 또는 직업교육의 충실을 도모하여 지방청년의 도시 집중을 방어함과 동시에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경기도 경찰부에서 조사한 문건인 1931년 6~11월의 「일지충돌사건(日支衝突事件)에 관한 관내 상황」에 따르면, 갑자구락부는 만주사변과 일본의 국제연맹 탈퇴에 대해 중국을 비난하고 일본정부의 국제연맹 탈퇴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시국대회·결의대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총독부와 일본정부에 대해서도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진정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갑자구락부의 이러한 활동은 당시 일본 내에서보다 더 활발하게 전개되어 여론을 환기시키는 데 큰 ‘효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12) 갑자구락부가 참정권 청원을 하면서 내건 이유는 다음과 같다. “선인 중에는 제국신민으로서의 자각이 없는 자가 있기 때문에 참정권 부여에 장애가 있다고 말하는 내지인이 있다. 하지만 재외 불령자(不逞者) 및 일부 학생의 불온행동만으로 조선인 전부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조선인을 최고의 국정에 참여시키지 않겠다는 방침을 취한다면 조선인의 사상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오늘날의 실정은 조선인이 관리가 되더라도 지방장관이 최고인데,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사정이 이렇다면 전도 있는 학생의 사상이 악화되는 것은 당연하다. 언제까지도 현상을 지속시켜 조선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거나 관직을 개방하지 않는다면, 결국 자포자기에 빠져 내선 양 민족의 복지증진과 동양평화를 위한 일한병합은 일본의 식량정책에 의한 병합이라고 말하더라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경상북도 경찰부, 『고등경찰요사』 1934).

갑자구락부는 1930년대 후반에도 중일전쟁 이후 중국을 지원하는 영국에 대해 시국간담회를 개최하는 등의 배영(排英)운동을 전개하였으며, 1939년 11월에는 창씨개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¹³⁾ 그러나 갑자구락부는 1930년대 중반 이후 국내외 정세의 변화와 이에 따른 총독부의 친일단체 정책 변화, 조선인들의 외면 등으로 회원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점차 퇴조하였다. 미나미 총독 부임 이후 세력 만화에 노력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5. 각파유지연맹(各派有志聯盟)

각파유지연맹은 관동대지진 이후 민심 수습과 민족운동 세력에 대항하기 위한 총독부의 방침에 따라 1924년 3월 결성된 연합단체였다. 참여단체는 국민협회(國民協會), 조선소작인상조회(朝鮮小作人相助會), 유민회(維民會), 동광회(同光會), 노농회(勞農會), 조선경제회(朝鮮經濟會), 교풍회(矯風會), 노동상애회(勞動相愛會), 대정친목회(大正親睦會), 동민회(同民會), 유도진흥회(儒道振興會), 청림교(靑林敎) 등 12개 단체였다. 처음 발기인회에는 국민협회·조선소작인상조회·유민회·동광회·노농회·조선경제회 등 6개 단체만 참여했으나, 이후 나머지 6개 단체가 참여하면서 각파유지연맹이 출범하게 된 것이다.

이 책에 수록된 관련 자료는 출범 당시의 상황을 조사한 경성본정경찰서 문건, 출범 이후 여론의 동향을 다룬 『동아일보』, 『시대일보』 등의 신문기사 등이다. 「대동단결 각파유지연맹 선언식 거행 정황의 건」, 「대동연맹회 강연회에 관한 건」 등에 나타난 출범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24년 1월에 열린 발기인회에서 각 단체들은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사상 선도에 관한 실행조건」을 채택하고 “관민일치의 노력으로 민족주의에 바탕을 둔 독립사상과 공산주의로 빛어진 과격사상에 대한 선도방법을 마련해서 시국을 바로잡는 데 이바지 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① 각파 및 유지의 연맹 선언서를 발표한다. ② 각단체 및 유지연합의 대강연회를 수시로 개최한다. ③ 내선인용화에 필요한 연극 및 음악을 장려한다. ④ 내선인 관민 유지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한다. ⑤ 일본 내지에 각파 유력자를 수시로 파견해서 내선인 사이의 각종 오해를 없앤다.”는 내용의 실행조건을 제시했다.¹⁴⁾

13) 「支那事變關係-各種團體銃後ノ活動狀況」(『治安情況』, 京畿道警察部, 1938.9) 및 「朝鮮民事令改定ニ對スル部民感想ニ關スル件」(1939.11.22, 『思想ニ關スル情報綴』 (4) 참조.

발기인은 각 단체를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박병철(朴炳哲, 유민회), 박해원(朴海遠, 조선경제회), 박해묵(朴海默, 조선소작인상조회), 박춘금(朴春琴, 노동상애회), 이풍재(李豊載, 유민회), 이병렬(李炳烈, 국민협회), 이동우(李東雨, 국민협회), 이강혁(李康赫, 조선소작인상조회), 이창환(李昌煥, 조선소작인상조회), 이승현(李升鉉, 조선경제회), 이용한(李容漢, 조선소작인상조회), 이계호(李啓浩, 조선소작인상조회), 이희간(李喜侃, 국광회), 유병룡(柳秉龍, 유민회), 이영석(李永錫, 국민협회), 유문환(劉文煥, 교풍회), 유병필(劉秉泌, 교풍회), 나홍석(羅弘錫, 조선소작인상조회), 우성현(禹成鉉, 국민협회), 고희준(高義駿, 국민협회), 정규환(鄭圭煥, 국광회), 정진홍(鄭鎭弘, 유도진흥회), 채기두(蔡基斗, 조선소작인상조회), 김환(金丸, 국민협회), 김우식(金禹植, 국민협회), 김명준(金明濬, 국민협회), 김상설(金相畵, 청림교), 김태훈(金泰勳, 유민회), 강인우(姜麟祐, 국민협회), 김중환(金重煥, 교풍회), 민갑식(閔甲植, 유민회), 신석린(申錫麟, 동민회), 예종석(芮宗錫, 대정친목회), 천영기(千英基, 대정친목회) 등이었다.

이어 1924년 3월에 열린 창립총회에서 “친박한 사상이 스며들어오는 것을 막고, 내선(內鮮) 두 민족의 융합에 힘쓰며 일한병합의 대원칙을 본받자”는 요지의 선언문과 함께, “1. 관민일치와 시정개선, 2. 대동단결과 사상선도, 3. 노자(勞資)협조와 생활안정” 등의 3대 강령을 채택했다.

그러나 각파유지연맹은 결성 초기부터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았으며 여기에 동아일보 폭행사건이 발생하면서 여론은 더욱 악화되었다. 이 때문에 일부 간부가 사퇴하기도 했다. 조선노동총동맹·조선청년총동맹 등은 각파유지연맹을 분쇄할 것을 결의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동아일보』의 「소위 각파유지연맹에 대하여」·「소위 각파유지연맹의 폭행사건」·「민중대회를 발기-불량단체 응징 결의」, 『시대일보』의 「피해자의 진술로 판명된 전율할 권총 위협」·「민중대회-경찰당국이 개최를 금지」·「변호사회 결의-유지연맹의 폭행에 대하여」·「소위 각파연맹의 주지(主旨)에 대하여, 그 선전강연회의 개최를 듣고」 등의 기사에 상세히 나타나 있다. 이렇게 처음부터 안팎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각파유지연맹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채 곧바로 쇠퇴했으며 몇 년

14) 그러나 각파유지연맹에 참여한 단체가 친일 성향 면에서 모두 일률적이지는 않았다. 조선경제회는 각파유지연맹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거세지자 각파유지연맹에 참가한 일이 없다고 물러났으며 유민회의 경우도 일제에 타협적이기는 하나 소극적이었다. 그럼에도 언론들은 각파유지연맹은 친일단체들이 단합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참여한 대가로 일제로부터 국유미간지, 삼림, 광산 등의 각종 이권을 얻는 것이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민족문제연구소, 『일제협력단체사전』(국내증양판), 2004, 233쪽)

되지 않아 명맥만 유지하는 단체로 전락하였다.

6. 시국대동단(時局大同團)

시국대동단은 1925년 1월 각파유지연맹(各派有志聯盟)의 일부 세력이 보천교(普天敎) 세력과 합작하여 내선융화를 표방하며 조직한 단체이다. “내선인(內鮮人)의 정신적 결합을 견고케 할 것, 대동단결하여 문화의 향상을 기할 것”을 강령으로 내걸었으며, 중심인물은 고희준(高羲駿), 채기두(蔡基斗) 등이었다. 주요 활동이 내선융화의 취지를 일반인에게 알리고 친일여론을 확산시키는 것이었지만, 각파유지연맹과 마찬가지로 초기부터 여론의 비난과 대중의 저항을 받았다.

이 책에 수록된 자료는 대부분 당시 신문, 잡지에서 시국대동단을 비난하거나 대중들의 저항을 다룬 글들이다. 『개벽』의 「창피 막심한 보천교의 말로」, 『시대일보』의 「대시국의 기형아 시국대동단의 첫 망신」·「시국대동단의 방자를 보고」·「민족적 백의(白蟻), 그 잠식력을 주의하라」·「안동서 또 망신」·「청주에서 혼비백산, 제물에 떨어져 말도 못하는 연사」·「시국단원 도망, 청년회에 쫓겨 영덕에서 대구로」, 『동아일보』의 「도처에서 개무시(狗×視), 시국대동 강연대 도처에서 개로 몰려」·「수라장화 한 강연회, 취지 설명도 마치지 못하고 경관 보호로 연사 겨우 퇴장」·「공청(公廳)에서 독폐(獨吠), 청중은 달아나」·「벽력(霹靂)은 도처에, 밀양에서 열린 강연, 학부형 대 분개」·「흠치교와 시국대동단 비밀리에 강연·도주」 등이다.

이에 따르면 시국대동단은 창립 직후부터 15명의 집행위원을 선정하고 선전대 8대를 조직하고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선전강연을 실시하였다. 이들이 지방 순회강연에 역점을 둔 것은 각파유지연맹이 경성에서 선전 활동을 하다가 일반인의 거센 배척을 받아 효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연사는 고희준, 채기두, 임경호(林敬鎬), 이계호(李啓浩), 나홍석(羅弘錫), 박병철(朴炳哲), 지동섭(池東燮), 이창환(李昌煥), 이강혁(李康赫), 이풍재(李豊載), 오태환(吳台煥), 김상찬(金尙燦) 등이었다. 이들은 1월 10일부터 말까지 전국을 돌아다니며 내선융화와 대동단결의 취지로 강연을 하였다.

그러나 강연회는 철저히 대중들로부터 외면을 받았다. 곳곳에서 봉변을 당하기 일췌였고 일반 보천교도들로부터도 원성을 들었다. 군산 강연에서는 “내선인의 모든 오해와 감정을 초월하여 형식적 융화는 버리고 정신적 결합을 하여 공존공영하자”는 연사의 말에 청중들이 분개하여 큰 소란이 일어나 경관이 개입하는 일까지 벌어졌으며, 포항 강

연에서도 청중들의 반발로 강연이 중지되기까지 하였다. 또한 각 지역에서 강연을 방해하는 일이 속출했고, 조선청년총동맹과 조선노농총동맹 등의 단체를 중심으로 시국대동단에 반대하는 조직적인 활동도 나타났다. 여기에 “직업적 부일도당(附日徒黨)인 각파유지연맹과 미신의 장발요적(長髮妖賊) 보천교도가 서로 결부하여 악마단(惡魔團)을 조직했다”는 등 시국대동단을 비난하는 여론이 비등했다. 뿐만 아니라 채기두 등이 각파유지연맹 내에서 자금을 유용하고 비밀리에 보천교와의 합동을 추진한 일 등으로 시국대동단 자체 내의 반목도 심했다. 결국 시국대동단도 각파유지연맹과 마찬가지로 오래가지 못했다.

7. 대동동지회(大同同志會)와 동유회(東維會)

대동동지회는 1920년 10월에 평양에서 조직된 대표적인 지역 친일단체였다. 평안남도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한 단체로서 중심인물은 회장 선우순(鮮于鎭)¹⁵⁾ 비롯해 김흥건(金興鍵), 나일봉(羅一鳳) 등이었다. 1920년대 전반기에는 “경성에는 국민협회, 평양에는 대동동지회”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표적인 지역 친일단체로 알려져 있었다. 강연회 등을 통해 내선융화를 표방하며 3·1운동 이후 조선의 사상계를 ‘선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1921년 9월부터 기관지인 월간 『공영(共榮)』을 발간하기 시작하였다. 『공영』은 평양 최초의 조선인 경영 잡지로 알려졌다.

이 책에 수록된 자료는 단편적이거나 대동동지회를 파악할 수 있는 설립 취지와 강연회 활동에 관한 『유도(儒道)』의 「대동동지회 취지서」, 『사이토 마코토 문서(齋藤實文書)』의 「대동동지회 상황보고」 등이다. 특히 「대동동지회 상황보고」는 초기 대동동지회의 강연활동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대동동지회는 1921년 8월부터 9월까지 약 한 달간 평안남도의 21개 지역에서 강연회를 개최하였으며, 연사는 회

15) 회장 선우순은 1921년 중추원 참의가 된 인물로 1920년대부터 철저한 내선일체(內鮮一體)를 강조한 인물이었다. 그는 “조선민족과 야마토민족은 이해관계가 공통되기 때문에 조선과 일본은 함께 나가야 하며, 조선인은 일본인을 믿고 일본은 조선인을 향상시켜 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내선일체는 영국 대 스코틀랜드·웨일즈와 같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이토 총독과도 자주 만났으며 일본 재계의 거물들에 조선인의 사상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자금 원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1921년 6월에는 대동동지회 회장 자격으로 약 1개월간 도쿄에 체류하며 수상 등 일본정부의 관료들을 만나 대동동지회 활동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민족문제연구소, 『일제협력단체사전』(국내중앙편), 2004, 220~221쪽)

장 선우순을 비롯해 나일봉·김홍진 등이었다. 강연 주제는 ‘군축회의와 관련한 태평양 회의에 대하여’, ‘국제공법으로부터 본 태평양회의’ 등 국제정세에 관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대동동지회는 조선인 내부에서 적극적인 지지를 끌어내는 데 실패하여 1920년대 중반 이후 점차 퇴조하기 시작했고, 1933년 선우순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명맥만 유지하게 되었다.

대동동지회의 활동이 미약해지자, 평양에서는 1935년 2월 대동동지회로부터 분립한 동유회(同維會)가 조직되었다. 동유회는 대아시아주의를 표방한 단체로서 설립 당시 회원은 조선인 64명이었다. 동유회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단체인데, 여기에 수록된 조선군참모부의 『1936년 전반기 조선사상운동개관』, 『西鮮日報』의 「신동아주의를 알리려 동유회 결함 성립, 조선인 자체의 실력양성과 동양사상 연구, 평양 명월관에서 창립 총회」, 『오사카마이니치신문(大阪毎日新聞)』의 「무언의 반항을 물리치고 신사(神社)에 참배하세, 반도의 동포에 호소한다, 동유회가 가절(佳節)에 성명서를 발표」 등은 동유회의 개략적인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8. 조선신궁봉찬회(朝鮮神宮奉讚會)

조선신궁봉찬회는 조선신궁 설립 10주년(1935년) 기념사업을 위해 1933년 10월에 총독부 주도로 설립된 한시적인 단체였다. 설립 취지는 ‘황도(皇道)’를 전국에 선포하고 국체를 밝혀 국민정신의 진작을 도모하고, 신의 대도(大道)를 선양하여 군민일체(君民一體)와 국운의 융성을 꾀한다는 것이었다.

이 책에 수록된 자료는 『조선신궁봉찬회 취지서·회칙·사업계획서』와 『조선』 및 『조선신궁년보』에 실린 조선신궁봉찬회 관련 기사 등이다. 이에 따르면, 관변단체인 만큼 정무총감이 회장을 맡고 도 지부장은 도지사가 겸임했다. 또 조선신궁봉찬회의 본부는 경성의 조선신궁사무소에 두고, 지부는 도청 내에 두었다. 여기에 민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지역별로 유력자들을 끌어들이었다. 발기인 및 임원 중 조선인은 방응모(方應謨), 박경석(朴經錫), 박보양(朴普陽), 박영효(朴泳孝), 박영철(朴榮喆), 장대익(張大翼), 장헌식(張憲植), 이범익(李範益), 이희섭(李曦燮), 이흥재(李興載), 한상룡(韓相龍), 송진우(宋鎭禹), 남궁영(南宮營), 정교원(鄭僑源), 고원훈(高元勳), 최선익(崔善益), 김서규(金瑞圭), 김신석(金信錫), 강완선(姜完善), 민영은(閔泳殷), 민대식(閔大植) 등이었다.

설립 목적은 조선신궁 10주년 기념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었다. 기념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봉축대제(奉祝大祭), 봉찬전(奉讚殿) 건설, 참집소(參集所) 확장, 신원(神苑)의 정비, 도로 매수, 임원(林苑) 정리, 기타 비용 등 총 26만 원이었는데, 이 중 국고보조금 8만 원을 제외한 18만 원을 민간 유력자에게 조달한다는 계획이었다. 또한 기부금을 독려하기 위해 조선신궁봉찬회의 회원을 기부액에 따라 5종으로 나누었다. 1,000원 이상을 기부하면 특별명예회원, 500원 이상은 명예회원, 100원 이상은 특별회원, 10원 이상은 정회원, 10원 미만은 찬조회원 등이었다. 기부금 모집은 총독 이하 정무총감, 부윤, 군수, 도사(島司), 도회의원, 부회의원, 읍회의원, 면협의회원 등이 동원되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1935년까지 봉찬전의 신축·참집소의 증축·용지매수·뒤편 참도 확장 및 간도 신설공사 등의 주요 사업을 완성하였으며, 1935년 1월 신궁봉찬창가(神宮奉讚唱歌)를 공모하여 그 가운데 3편을 선정하고 1935년 10월 신궁봉찬회 사업 준공봉고제(竣工奉告祭)를 개최하였다.

〈참고논저〉

- 강동진, 『일제의 한국침략정책사』, 한길사, 1980.
 임종국, 『일제침략과 친일파』, 청사, 1982.
 박경식,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지배』, 청아, 1986.
 이태훈, 「1920년대 초 자치청원운동과 유민회의 자치구상」, 『역사와 현실』 39, 2001.
 민족문제연구소, 『일제협력단체사전』, 2004.
 마츠다 도시히코 저, 김인덕 역, 『일제시기 참정권문제와 조선인』, 국학자료원, 2005.
 김동명, 『지배와 저항, 그리고 협력』, 경인문화사, 2006.
 이태훈, 「중일전쟁 이전 직업적 친일파의 친일론」,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6년도 학술연구용역 결과)

* 해제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나 일부 내용은 본 위원회의 취지와 다를 수 있음.

I. 국민협회(國民協會)

1. 현황과 운동

1) 국민협회 회장 민원식(閔元植) 탄원서

민원식 탄원서

저는 미력단재(微力短才)합니다만, 작년 봄 국가의 불상사인 소요사건 발발 이후 정신 건마(挺身犬馬)의 노력을 기울여 인심의 진무지도(鎭撫指導)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신정(新政)의 보급에 철저히 힘써 반도의 치평(治平)과 국운의 융창에 공헌하고자 협성구락부를 조직하고 동지를 규합하여 분주히 활동했습니다. 이후 이를 국민협회로 변경하여 더욱 회세(會勢)의 신장을 도모하면서 주의와 목적을 관철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시사신문(時事新聞)을 창간하여 일선인의 공존공영을 골자로 하는 신일본주의를 선전하였습니다. 일시동인(一視同仁)의 성지(聖旨)를 받들어 당국의 동화정책을 달성할 수 있는 보조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위해 악전고투하고 있습니다.

당국도 일시동인의 성지에 의거하여 반도에 동화정책을 실시하고 소위 내지연장주의를 통해 일부 지방에 자치를 실시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창도한 신일본주의와 그 근본이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건대 소위 독립파의 준동(蠢動)은 앞으로도 쉽게 종식될 것 같지 않습니다. 또 별도로 국제적 자치파라는 것이 있는데, 그들은 종교의 힘과 경제의 힘을 이용하여 많은 청년과 실업가 등을 수람(收攬)하여 세력을 부식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의 전도(前途)는 결코 업신여길 수 없고, 또 몇 년 후에는 제2의 소요사건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소요사건으로 인해 조선의 재능이 있는 청년을 비롯해 기타 민중이 입은 직·간접의 손해는 실로 컸습니다. 이는 국가로서도 큰 손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형벌에 저촉되거나 자포자기에 빠져 있습니다. 한번 머리에 박힌 어두운 그림자는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장래가 실로 한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더욱이 하루아침에 불행하게도 국제적 자치파가 깃발을 들었습니다. 당국은 어떻게든 대처하겠지만, 이는 또 다시 결과적으로 약간의 희생자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점점 과격사상이 침입하여 계급타파와 질서문란이 왕왕 일어날 우려가 있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이처럼 반도에는 앞으로 아주 곤란한 정치적, 민족적 문제가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발발한 다음에 이를 억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실패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그 맹아를 잘

라 화를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정부는 조선의 관제개혁을 실시하고 태형폐지, 지방자치, 산업장려, 교육보급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선, 위생, 기타 제반 시설을 정비하여 선정을 더욱 많이 펼쳐 민중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것은 크게 기뻐할 일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정부의 선정만으로 2천만 민중의 사상을 완화하고, 이를 선도하여 유감이 없도록 도모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인 우리 국민협회와 같이 일종의 여당기관, 즉 정부와 주의 주장을 함께하는 단체의 활약을 기대하는 바가 정말 크다고 확신합니다.

일본의 사상문제는 국가와 사회에 극히 중대한 관계를 미친다며 신중히 강구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렇다 치더라도, 만약 조선에서 사상문제와 같은 것이 아무렇지도 않다면 방임한다면 이는 실로 심각한 일입니다. 조선은 일본에 비해 일반의 지식 수준이 아주 낮고, 결과적으로 사상문제가 미치는 영향은 훨씬 심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잠시 먼저 민심을 계발 선도하여 그 근본적인 건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기왕의 일한병합은 단지 정치상의 결합에 불과합니다. 일선 양 민족 간에 사상의 소통과 융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충분한 이해와 자각은 앞으로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 국민협회와 시사신문은 이 점에 입각하여 국가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 동지는 대활약과 분투를 하겠지만, 독립파와 자치파 또한 무언가 일을 할 것입니다. 필경 우리 동지가 주의 주장을 위해 취하는 바는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점을 감히 여기에서 고백합니다.

우리 국민협회가 만약 조선 2천만 민중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진정한 제국신민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는 반도 민간단체에서 가장 의의 있는 기관이라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은 이를 이루기 위해 적당한 후계자를 확보하고, 처음의 일념을 관철해야 한다는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국민협회의 이상과 자신감은 대강 앞에서 말한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소위 신일본주의자 일파인 국민협회와 시사신문에 모인 무리는 모두 주의보다도 오히려 '뺑'을 위해서 모였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 동지가 모두 자산계급이 아니라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금 국민협회에는 멀리 만주 방면에서 오는 자도 있고, 조선 내의 유식한 청년이나 지방 유력자 등의 입회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는 주의이고, 생활은 생활입니다. 주의와 생활은 다른 문제입니다. 같은 주의자의 생활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구제의 길을 강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동지 가운데 상당히 유망한 인물은 먼저 국민협회의 간부가 되고, 나아가 관계(官界)나 민간의 적당한 지위를 추구하고 의식을 해결함과 동시에 국가에 공헌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점차 새로운 인물의

동지를 만들어내면서 협회의 업무를 성취하고자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국민협회와 시사신문이 몹시 애써 우리 동지에게 생활의 밑천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생활문제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비단 그들만의 일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관리와 공인은 봉급으로 먹고 입습니다. 비단 우리 협회원과 신문사원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디 세상의 공평한 비판이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저 민원식의 일신의 안위와 성패는 원래부터 문제가 아닙니다. 함께 국사(國事)에 분주해야 할 동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당면한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는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분투노력하여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 국민협회와 시사신문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결심합니다. 제가 절실히 바라는 바는 다음 두 가지 사항입니다.

1. 재원(財源)을 만들 것.
2. 국민협회의 중요한 자격이 있는 자는 모두 점차적으로 관리로 등용시킬 것.

제가 그동안 국민협회와 시사신문을 위해 실로 10만 원이 넘는 재산을 투자하였습니다. 지금은 모든 재원이 고갈되어 협회의 활동과 신문의 경영도 아주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특히 신문은 정말로 비참하여 빈사상태에 있습니다. 필경 저의 부덕불명(不德不明)의 소치라는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소요사건이 발발하자 반도의 장래에 심히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 조선 2천 만 민중 가운데 그 누구 한 사람도 일어나 국사에 분주하는 자가 없어 형세는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저는 일편답심으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온몸을 바쳐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저의 애정(哀情)과 성의를 부디 잘 살피주시리라 믿습니다.

오직 이러한 경우에 협회와 신문 양자 모두 어느 정도의 기초를 확고히 하여 먼저 1개년을 유지하고, 이후 적어도 신문은 자립, 자영의 계획을 세우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약 35~36만 원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도저히 미력하여 이를 마련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별지의 사업경영정산서를 참조하시어 특별하고 현명한 고려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여기에 진심을 피력하여 엮드려 탄원합니다.

1920년 6월 8일
국민협회 회장
시사신문 사장
민원식(閔元植)

사이토(齊藤) 총독 각하

사업경영정산서

(갑) 국민협회

1. 현재 경성본부 외 지방지부 약 20개소를 두었고, 올해 안에 전체 회원 수 적어도 2만 명 이상을 달성할 전망.

2. 수지 예산 개략
수입
 - 금 20,000원 회비
 단, 회원 1인에 대해 연액금 1원으로 상정하여 2만 명 분
 - 금 164,000원경비
내역
 - 금 20,000원 회세(會勢) 확장비
 단, 각지 유세 및 회원모집 기타
 - 금 24,000원 경성본부비
 단, 월액금 2,000원, 1개년 분
 - 금 120,000원 지방지부비
 단, 월액 평균금 500원, 20개소, 1개년 분

공제부족액 금 144,000원

(을) 시사신문사

1. 국민협회 본부와 아울러 사옥을 건축하고 운전기와 기타 제반 설비를 정돈하여 일간 부수 2만 부를 발행할 예정이다.

2. 위의 제반설비 정산

- 금 100,000원 제반설비비
- 내역
- 금 60,000원 국민협회 본부 및 시사신문사 건축비
- 금 20,000원 운전기, 사진동판부, 기타 설비비
- 금 10,000원 신활자류 구입비
- 금 10,000원 제반 기구 및 기타 잡비

3. 신문경영 수지예산 개요

수입

- 금 60,000원 신문대금 및 광고료 월액금 5,000원 1개년 분

지출

- 금 180,000원 제반 경비 및 원료 대금 등 월액금 15,000원, 1개년 분
- 공제부족액 금 120,000원

(병) 국민협회 및 시사신문사

경영자금 소요액 정산

- 금 144,000원 국민협회 경비 부족액 1개년 분
- 금 120,000원 시사신문사 경비 부족액 1개년 분
- 금 100,000원 국민협회 및 시사신문사 관계 현재 부채

합계 금 364,000원

이상

〈출전 : 閔元植歎願書, 1920년, 『齊藤實文書』, 일본국립국회도서관 한정자료실 소장〉

2) 『국민협회사』(1921)

- 국민협회사 제1 목차 -

- 제1. 서언
- 제2. 협성구락부 설립 및 경과
 - (1) 설립 이유
 - (2) 설립발기회
 - (3) 설립총회
 - 협성구락부 취의서
 - 규약
 - 규정
 - 임원 명단
 - (4) 사업 개요
 - ① 시사신문 발행 출원
 - ② 가뭄피해조사 및 민정시찰
 - ③ 신일본주의 선명(宣明)
 - ④ 시국강연회 개최
 - ⑤ 신일본주의 선전
 - ⑥ 시사신문 발행허가
- 제3. 국민협회 설립
 - (1) 설립 이유
 - (2) 설립총회(발회식)
 - 국민협회 취지서
 - 주의
 - 강령
 - 회칙
 - 임원 명단
 - (3) 사업 개요

- ① 시국강연회 개최(각 지방 유세)
 - 평양, 함흥, 부산, 공주, 청주, 전주, 광주, 대전, 춘천, 진주, 마산, 부산, 대구
 - ② 참정권 요구청원(제1회)
 - ③ 시사신문 발행
 - ④ 참정권 요구청원(제2회)
 - ⑤ 대회 및 평의회회
 - ⑥ 회칙 중 개정
 - ⑦ 지부 설치
 - 평양, 공주, 대구, 광주, 마산
 - ⑧ 본부 소재지
 - ⑨ 현재 임원 명단 및 총회원수
 - ⑩ 창립 1주년 기념 시국대연설회 및 기념식
- (4) 회세(會勢) 발전의 대략적 상황 및 현상 개요

이상

국민협회사 제1

제1 서언

1914년 6월 발칸반도의 북방, 중구(中歐)의 남단, 오스트리아령 보스니아 주 수도 사라예보 시의 거리에서 울린 한 발의 총성으로 유럽에서는 경천동지(驚天動地)의 대참극이 일어나 유사 이래 미증유의 세계 대전란이 시작되었다. 동양에서는 일본과 독일이 전쟁을 시작하여 막막한 전운이 거의 전 세계를 뒤덮었으며 재앙이 어디로 미칠지 몰랐다. 5년이 지난 1918년에 이르러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연합군에 항복하면서 점차 세계평화가 회복되어 강화회의가 개최되고 국제연맹이 성립되었다. 미국 대통령 윌슨이 민족자결주의를 제창하고 러시아가 와해되어 세계적으로 급격한 사상적 동요가 일어났다. 일한병합 후 10년이 지나지 않아 우리 조선 민족의 정치적 욕구는 세계사조의 여파를 받았고, '민족자결'이라는 신조어를 오해하여 독립소요사건이 돌발하였다. 즉 1919년 3월 1일 조선에 일어난 반국가적 소요는 정말로 성대(聖代)의 불상사로서 우리는 통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동지는 일편단심으로 오로지 제국의 전도를 염려하고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이 시국을 구하고 민심을 지도하여 국가와 민족의 영원한 영광과 행복을 온전히 추구하기 위해 분기하였다. 우리 국민협회는 이렇게 생겨나 이후 분투, 노력하고 악전고투하여 오늘날에 이르러 사업의 실마리를 이루었지만, 이후에도 전도는 여전히 요원하다. 널리 세상의 성원을 얻어 더욱 용왕매진(勇往邁進)할 것을 다짐하면서 초심을 가지고 관철해나가야 한다.

현 국민협회장, 시사신문 사장 민원식 씨는 경기도 양평군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 집을 떠나 일본으로 건너가 약 9년을 지내다가 20세에 조선에 돌아왔다. 그동안 고(故) 이토(伊藤) 공을 알아 구 한국정부의 내부 서기관이 되었다. 얼마 되지 않아 이를 사직하고 프랑스에 유학하려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고, 한때는 정부로부터 감시를 받은 적도 있었다. 이후 정당조직과 언론경세에 뜻을 품어 당시 한국의 2대 정당인 일진회와 대한협회의 중간당으로서 정우회(政友會)를 조직하고 스스로 수령이 되었다. 또 기관지 시사신문을 발행하여 사장이 되었지만, 일한병합이 이루어져 정우회는 해산되고, 시사신문은 폐간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총독부 군수로 등용되어 경기도 내 두세 곳의 군수를 역임하다가, 1920년 뜻밖에 소요사건이 돌발하자 우려를 금할 수 없어 술선하여 시국수습의 길에 나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였다. 관직에서 물러나 일선 양민족의 공존공영과 융화동화를 근본으로 한 ‘신일본주의’를 제창하여 고심참담하였다. 거액의 자금을 들여 일신을 희생하여 이바지하고 악조(惡潮)와 팽배하는 노도(怒濤)에 악전고투를 지속해 동지를 규합하여 협성구락부를 조직하였다. 그는 이를 국민협회로 바꾸는 한편 시사신문을 발행하여 주의와 주장을 펼칠 결심으로 더욱 용왕매진하고 있다(현재는 중추원 부참의 직을 맡고 있다). 생각건대 우리 국민협회는 전적으로 현대 우리 반도 2천만 동포 가운데 한 사람인 민원식 씨에 의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시대의 요구가 오직 민원식 씨로 하여금 설립하게 만들었다고 말할 따름이다.

제2 협성구락부 설립 및 경과

(1) 설립 이유

민원식 씨는 소요사건의 원인을 없애고 현실을 직시하며 더욱이 장래를 위해 시국 수습에 대한 획책과 조선 민족의 영원한 번영과 행복을 향유할 근본적 해결에 부심초려(腐心焦慮)하였다. 그래서 이동우(李東雨)와 김환(金丸), 기타 동지와 서로 협력하여 단

체를 조직하고, 견인불발(堅忍不拔)하여 시국을 구하고 인심을 선도하고 또한 장래 동포의 영원한 복리를 확립시킬 것을 기약하여 곧 분연히 꺾기하여 협성구락부를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2) 설립발기회

우리 동지는 1919년 7월 29일 오후 5시 반부터 경성부 남산정 3정목 파성관(巴城館)에서 서로 만나서 협성구락부 설립발기회를 열어 협의하였다. 당일 출석자는 다음과 같다.

민원식(閔元植), 이동우(李東雨), 김환(金丸), 김태영(金泰榮), 김명준(金明濬), 황석교(黃錫翹), 김석태(金錫泰), 김형복(金亨復), 권태전(權泰銓), 민석현(閔奭鉉), 최진(崔鎭), 유해중(劉海鍾), 최강(崔岡), 이병조(李秉祚)

민원식 씨로부터 본 구락부 설립의 동기, 취지 및 목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 토의 끝에 취의서, 규약 및 규정의 각 안을 의결하여 8월 1일 설립총회를 열기로 결정하고 11시 반에 산회하였다.

(3) 설립총회

1919년 8월 1일 오후 5시부터 경성부 남산정 3정목 경성호텔에서 협성구락부 설립총회를 개최었는데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민원식(閔元植), 이동우(李東雨), 김환(金丸), 김태영(金泰榮), 김명준(金明濬), 황석교(黃錫翹), 김석태(金錫泰), 김형복(金亨復), 권태전(權泰銓), 민석현(閔奭鉉), 유해중(劉海鍾), 최강(崔岡), 김달현(金達鉉), 최호선(崔浩善), 조동식(趙東植)

김명준 씨는 발기인을 대표하여 개회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김명준 씨가 임시의장이 되어 토의한 결과, 구락부 취의서, 규약 및 규정 원안의 일부 수정을 거쳐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협성구락부 취의서

모든 생물의 생명이 열애(熱愛)하고 향락을 욕구하는 것은 본능에서 나온다. 인류 또한 그러하지만 인류가 여러 많은 동물과 다른 것은 본능을 섭리할 영능(靈能)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인류에게 진화와 광명이 있는 이유이다. 생각건대 대의(大意)의 존재 여부를 불문하고 분명 대의에 맞는 인간 최선의 노력은 충성에 있다. 우리가 충성이라고 칭하는 것은 인류 진화의 과정에서 각 시대 최고 문화의 완벽한 도야(陶冶)를 거

친 인류의 본능에서 나오는 자애의 진면목을 가리킨다.

인간으로서 자신을 사랑하고 그 삶을 즐기고 싶은 심정이 없다면 빈 공간을 채우는 뼈대에 불과할 뿐이다. 하지만 만약 자신에 대한 충성이 없이 오로지 본능의 욕구만을 뒤쫓는다는 것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음은 물론이고, 인류의 본성에 맞지 않는 것이다. 또한 한 사회에서 그것이 인격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로지 그 본능만을 만족시키기 위해 세태를 쫓아 이에 순응하려는 것은 필시 충성이 없어져 질서와 강령은 그 사회에서 이반될 것이다. 독일은 동양의 예로 든다면, 그 국민은 동양도덕이 가르치는 자양자제(自仰自制)인 자기 본능의 발호를 용인하지 않고 또 일국의 제왕으로서의 책무에 대한 충성만을 생각하여 동양에서 치도(治道)를 실천하고 자기 개성의 현양에 몰두하는 것이 미미하게 되어 세계대전을 유발함으로써 미증유의 참극을 연출하여 국가와 인민을 잘못된 길로 이끌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러시아 혁명은 그 국민이 삶을 즐겨야 한다는 열렬한 욕구에서 출발했는데, 결국 과격사상에 사로잡혀 국가의 해체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은 개인의 독립으로 국가의 독립을 대신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심정이고, 저 포악한 압제 정치하에서 신음하는 러시아 국민의 마음 속에 한편으로는 동정의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국가와 사회를 부정하고 일신의 이해와 영욕에 대해서조차도 진중한 고려를 더하는 충성이 없기 때문에 지구상에 아직도 암흑세계를 드러내고(現出) 있다는 것은 인류에 있어서 정말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이러한 견해에 따라 충성을 인간의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하여 생각건대 우리 동포의 사상 내지 사회 현상은 각 구성원의 충성을 필요로 함이 대단히 간절하다. 즉 동지가 서로 힘을 합쳐 사회 전반의 사건에 대해 모조리 연구를 수행하고, 일신을 위해 또한 사회를 위해 충성을 장려하고, 스스로 인간의 본성을 다함과 동시에 사회의 복리를 증진시켜야 한다. 협성구락부 설립의 취지는 바로 여기에 있다.

1919년 8월 1일

규약

- 본 구락부는 우리 동포 개인에게 장차 그가 속할 사회에서 첫째로 충성을 바탕으로 그 영욕과 이해를 고찰할 기회를 주는 데 노력할 것.
- 본 구락부는 각종 사회적인 사항을 연구하고 구성원 상호 지식의 교환을 행할 것.
- 본 구락부원은 각 구성원 공조의 정신을 견지할 것.

협성구락부 규정

규칙

- 제1조 본 구락부는 협성구락부라 칭한다.
- 제2조 본 구락부는 경성에 둔다.
- 제3조 본 구락부의 이름을 내건 모든 행위는 평의원회 또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 제4조 본 구락부의 경비는 회원이 분담한다. 단 회계규칙은 별도로 정한다.
- 제5조 본 구락부원은 입회비로 금 5원을 입회와 동시에 납입하고, 회비로서 금 1원을 매월 납입한다. 회비는 각 분기 말에 일괄 납입할 수 있다.
- 제6조 본 구락부는 부원의 독지에 의한 기증을 받을 수 있다.
- 제7조 본 구락부에 가맹하려는 자는 부원 3명의 추천이 필요하다.
- 제8조 본 구락부원으로서 구락부의 체면을 훼손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임원

- 제9조 본 구락부는 간사와 평의원을 둔다.
간사 및 평의원은 정원을 두지 않는다. 단 회원수는 총회에서 임시로 정한다.
간사 및 평의원의 임기는 1개년으로 한다. 단 재선될 수 있다.
- 제10조 간사는 호선을 통해 간사장, 서무주임, 회계주임 각 1명을 두고, 평의원장도 이에 준하여 선정한다.
- 제11조 간사장은 업무를 총리하고, 각 주임간사는 분장 사무를 처리한다. 분장 사무가 없는 간사는 각종 사회적 사항의 조사, 연구를 행한다.
- 제12조 간사에 결원이 생길 때는 후임자를 선정한다.
- 제13조 간사 및 평의원은 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선거한다. 단 출석인원의 과반수를 얻어야 한다.
- 제14조 평의원의 권리와 의무는 평의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고문 및 찬성원

- 제15조 본 구락부에는 고문 및 찬성원을 둔다. 단 그 수는 정하지 않는다.
- 제16조 고문 및 찬성원의 추천은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제17조 고문 및 찬성원은 중요한 업무에 관한 자문 및 모의(謀議)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다.

총회

제18조 본 구락부의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두 종류로 한다.

제19조 정기총회는 매년 3월 및 9월에 개최한다. 간사장이 시일을 정하고 총회 소집 수속을 한다.

제20조 임시총회는 평의원회 또는 부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간사장이 소집한다.

제21조 총회는 부원(部員)의 반수 이상이 출석하지 않을 때는 개최할 수 없다.

평의원회

제22조 평의원은 호선을 통해 평의원장 1인을 선거한다.

제23조 평의원회는 간사장의 요구 또는 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를 통해 수시 개최한다. 단 평의원장이 수속을 행한다.

제24조 총회의 모든 안건은 평의원회의 과반수 이상의 의결사항이 필요하다.

제25조 평의원은 업무에 대한 심의권을 갖고, 그 심사사항은 의견을 붙여 총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26조 본 규정 및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총회에서 임시로 정한다.

이상

이어서 당 규정에 따라 임원 선거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이 당선되었고, 11시 반에 산회하였다.

간사장 : 이동우(李東雨)

간 사 : 황석교(黃錫翹), 권태진(權泰鎭), 유해중(劉海鍾)

평의원 : 민원식(閔元植), 김명준(金明濬), 김환(金丸), 김태영(金泰榮), 김우식(金禹植), 김달현(金達鉉), 김형복(金亨復)

또 평의원 호선 결과 김명준(金明濬) 씨가 평의원장에 당선되었다.

(4) 사업 개요

① 시사신문 발행, 출원

협성구락부는 주의를 선전하고, 사회 선도를 위해 기관신문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1919년 8월 26일 신문발행의 허가를 당국에 출원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문지의 제호 : 시사신문(조선어 및 일본어)
- 기사의 종류 : 정치, 경제, 학술, 기예(技藝), 시사평론 및 사회 전반의 지도 기사 및 광고
- 발행 시기 : 일간
- 발행소 : 경성 시사신문사
- 인쇄소 : 경성 시사신문사 인쇄부
- 발행인 : 이동우(李東雨)
- 편집인 : 이동우(李東雨)
- 인쇄인 : 김형복(金亨復)

② 가뭄피해 조사 및 민정시찰

협성구락부는 1919년 가뭄피해에 처하여 같은 해 8월 22일 피해 정도 및 민정의 흐름을 조사 시찰하여 시국수습에 도움이 되고자 위원을 각 피해 지방에 파견하였다. 출장 지방 및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경기도 : 민원식(閔元植)
- 황해도 : 김명준(金明濬)
- 평안남도 : 김석태(金錫泰)
- 평안북도 : 김형복(金亨復)
- 함경남도 : 김달현(金達鉉)

③ 신일본주의 선명(宣明)

1919년 10월 협성구락부는 민원식 씨의 이름으로 일선(日鮮) 양 민족의 공존과 동화를

주지로 하는 '신일본주의' 선명서(宣明書)를 발표하고 널리 이를 세상에 반포하였다. 전 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 조선의 최근 사정에 실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세상이 식자(識者)는 어찌면 세계적 사조의 영향을 받고 있고, 인심은 완미(頑迷)하여 세태를 분별할 수 없는 탓으로 돌린다. 두 견해를 어찌면 긍정해야 할지 부정해야 할지 모르나, 생각건대 우주의 모든 삼라만상은 모두 인간의 심리에 작용되지 않는 것이 없다. 민심동요의 원인은 원래부터 복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심을 바로잡는 방도는 정리(情理)를 다하여 이를 이해하고 타일러 각성을 촉구하는 이외에 방법이 없다. 즉, 저는 불초하지만 하늘의 명시(冥示)에 따라 신일본주의를 제창하는 까닭이다.

1918년 10월

민원식

신일본주의

우리는 생활의 안정을 요구한다. 이는 단순히 우리 개인의 행복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다. 국가 사회의 강녕을 지키고 융창(隆昌)을 계획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건은 개인 생활의 안정을 확보하는 데에 있다.

또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생활을 확충시켜야 한다. 인류의 본능은 진화를 바란다. 현대 문명의 원천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하지만 개인 생활의 안정은 자칫하면 인심을 이완(弛緩)시켜 잡념을 생기게 한다. 특히 인류가 천하에 누리는 본능, 즉 왕성한 진화욕(進化慾)조차 감퇴시켜 생활을 소공(疎空)하게 만들기도 한다. 우리 반도의 최근 모습을 보면 인심의 황탕(荒蕩)이 실로 우려할 만하다. 생각건대 다소 생활의 안정을 얻어 인심이 이완되고 망상에 빠지는 간극(間隙)이 생겨 진화욕의 사로(邪路)에 빠지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는 우리 동포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그 존재를 빛나게 만들기 위해 개인 생활에 충실하고 인심을 긴장시켜 진화욕을 정도(正道)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생활의 충실은 각 개인의 자각에서 출발하고, 자각이 진보하여 자각이 성취된다. 아무런 준비 없이는 아무런 성산(成算)이 없다. 조선독립운동이 표방하는 '독립'이 반도민의 이해를 초월하여 그 자체가 존귀하다고 말하는 것은 착각에서 나오는 것이다. 마치 미개인이 우상을 숭배하여 행복할 수 있다는 것과도 같다. 미신과 같이 독립은 곧 조선 민

족의 영광이다. 이를 위해 우리 반도의 동포는 비록 어떠한 노력도 심대한 희생도 불사할 수밖에 없다. 개인생활을 완전히 집단생활에 협조하는 것이 국가 최고의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현대 사상과 아주 멀어져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무자각을 드러내는 망동에 불과하다. 인심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이것이다. 우리 동포는 바른 이치로 각성하여 망상을 없애고, 공론을 배격하여 각자 생활을 충실히 하고, 향상시켜 사회의 진운(進運)에 이바지해야 한다. 우리는 독립국가의 가치를 경시하지 않는다. 인류의 복지는 각자 국가에 의해 보장받고 있다.

우리 조선 민족은 실로 일본제국의 신민으로서 생활의 안정을 보장받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조선통치방침을 보면 우리 조선 민족의 실력을 기르고 문화를 발전시키려는 의사가 특히 절실하다. 다만 민권이 아직 신장되지 않아 우리 동포의 지망(志望)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비록 조선 4천 년의 역사가 불과 신정(新政) 10년 만에 민권을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과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요컨대 우리 동포는 현재 독립국 국민이라는 사실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만약 구한국이 오늘날 존속한다면, 이에 대해 충성을 다하여 국운의 융창과 국위의 선양을 도모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병합은 이미 과거의 사실이 되었다. 어떠한 이론상의 설명도 오늘날 이를 부인할 수 없다.

“독립운동은 조선 민족의 정치적 또는 사회적 생활개선 요구를 충족시킬 유일 또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 그들은 현재 안주하는 위치에서 진보와 발달을 위해 힘쓰지 않으면 안되는 합리적인 노력을 피하고 있다. 허영과 자아가 긍정되는 경지에 대한 동경일 뿐이다”고 말하는 공평한 열강의 비판은 그 진상을 잘 알고 있다고 해야 한다. 독립운동은 도저히 행복과 영광을 우리 동포에게 가져다주는 길이 아니다.

더군다나 병합으로 대일본제국은 일선 양 민족 공동의 국가가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단순히 정치상의 사건으로 바라볼 일이 아니다. 일선 민족의 합체라고 불러야 하는 것이고, 기회를 이룬 것은 양국의 국력 차이와 정치상의 이유에 있다. 따라서 양 민족의 합체와 동시에 양자에 대한 국가제도에서 일정한 차이가 보이지만, 이러한 합체는 근본 조건이 아니라 정치상 가설적 장애에 대한 잠정적 제도이다. 조선 민족이 정당한 노력을 통해 민권을 신장하는 것은 국가의 본의에 맞는 일이다. 이제와서 조선 민족이 불평을 품을 이유는 없다. 실로 물질적 문명이 발달한 현대의 여러 사정 가운데 특히 교통이 편리해지면 경제관계가 밀착된다는 사실로 볼 때, 쓰시마해협을 사이에 두고 일선 양국이 대립하여 동종동문인 일선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명칭을 고수하여 하나는 야마토(大和) 민족이라고 칭하고, 다른 하나는 조선 민족이라고 부르며 서로 국가의 이해 때문에

항쟁하여 양 민족의 화합으로 당연히 누려야 할 복지를 말살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 필경 양 민족의 합체는 지상에 내린 하늘의 뜻에 합당하다고 해야 한다. 따라서 하늘의 뜻을 준수하여 민족의 번영을 증진시켜야 한다.

국가에 충성을 권장하는 것은 즉 대의(大義)에 순응하는 것이다. 때문에 조선 민족이 역사를 과장하여 스스로 높은 공지를 품고 조선의 독립을 크게 선전하여 동포의 우려를 생각하지 않는 것은 소의(小義)에 빠져 대의를 어그러뜨리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반대로 일본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백성이 국토에 넘쳐흘러 그 증가 비율은 거의 세계의 으뜸으로 장차 강성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현재 아직 6천만을 넘지 않는다. 국민의 활기가 아무리 왕성하다지만 옆 나라 중국의 4억에 비하면 불과 1할 2푼에 지나지 않는다. 국가의 부강은 반드시 영토의 강역 내지는 인구의 다소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제국이 반도의 땅과 더불어 1천 7백만의 충성을 함께 모을 수 있는가의 여부가 국가의 위용에 큰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이를 얻었을 때, 실제로 동양의 맹주다운 실력을 지닌 제국의 모습이 실제와 상응하여 더욱더 위엄의 중대함이 더해지고, 특히 국시(國是)의 신장이 상당할 것이다. 그러면 양 민족의 합체와 동화, 공존은 정말로 하늘의 뜻이며 또한 시세에 순응하는 것이다. 일선 민족은 여기에서 이러한 이치를 생각하여 도리에 따라 일한병합 즉 양 민족의 합체라는 사실을 존중함으로써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한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취지를 요약해서 신일본주의라고 부르고 다음과 같은 주장을 분명히 밝힌다. 조선 민족은 대일본제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합법적 노력으로 민권의 신장을 도모하는 것도 무방하다. 비록 반국가적 사상을 품거나 또는 조선의 독립을 계획하는 것은 대의에 어긋나고 명분에 반할 뿐만 아니라, 1천 7백만의 복지를 저해하는 폭거일 뿐이다. 조선 민족은 마땅히 국가에 대해 충성을 맹세하고 정당한 노력을 통해 생활을 확충하여 문명국민으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야마토 민족은 조선 민족의 의사와 감정을 존중하여 제국의 신민인 조선 민족의 향상을 위한 정당한 제반 노력에 항상 공정한 태도를 지니는 것이 지당하다고 믿는다.

④ 시국강연회 개최

협성구락부는 시국의 추이를 바라보며 동요된 민심을 진정시키고 이를 통솔하여 올바른 길로 되돌려 상궤(常軌)를 밟게 하기 위해서 궐연히 분기하여 큰소리로 급히 불려서

동포의 각성을 촉구하고자 1919년 11월 1일 제1회 시국강연회를 경성 종로 우미관(優美館)에서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다.

- 사회자 : 협성구락부 간사장 이동우(李東雨)
- 강 사 : 평의원장 김명준(金明濬)(강연 제목 : '인생의 요구')
- 강 사 : 평의원 김환(金丸)(강연 제목 : '이성과 감정')

⑤ 신일본주의 선전

협성구락부는 이미 '신일본주의'를 분명히 밝히고 문자로 이를 세상에 반포하였다. 더 나아가 일본 조야의 각 유력자를 만나 친히 선전에 힘을 기울여 의견을 교환하고 묘의(廟議)를 열고 관계와 민간의 여론을 조성하였다. 그리고 일본 동포의 양해를 깊게 하고 찬동을 얻을 필요성을 절감하여 1919년 11월 3일 민원식 씨는 본 구락부를 대표하여 커다란 사명감을 안고 도쿄, 오사카, 기타 지역을 순유(巡遊)하였다. 각지의 여러 계층을 만나 심혈을 기울여 설득하고 선전에 최선을 다한 결과, 우리의 친애하는 동포는 훌륭히 우리의 진의를 이해하고, 대세가 향하는 바를 짐작하는데 깊은 찬조와 성원으로 오히려 소기 이상의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⑥ 시사신문 발행허가

1920년 1월 6일 지령 제1호로 시사신문 발행의 건을 조선총독으로부터 허가받았다. 곧바로 창간 준비에 착수하였다.

제3. 국민협회의 설립

(1) 설립 이유

이후 조선의 민심은 더욱 동요하였다. 차츰 험악한 경향을 띠고 쉽게 안정을 찾지 못하여 앞날에 대한 우려가 극심하였다. 더욱더 우리의 발분노력이 긴요한 가을에 이르러

기존의 구락부 조직으로는 충분히 활동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협성구락부를 개편하여 하나의 협회로 만들었다. 규모를 확장하여 정치적 훈련단체로 만들었고, 주의와 강령을 정하여 천하에 공표하고 또한 제반 긴급한 사항의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시세의 추이에 따라 착착 계획을 추진하고 주의와 주장의 관철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협회를 설립하게 된 것이다.

(2) 설립총회(발회식)

1920년 1월 18일 오후 1시부터 경성부 남산정 3정목 경성호텔에서 국민협회 설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출석자는 51명이었다. 토의 끝에 취지서, 주의, 강령 및 회칙을 의결하고 곧바로 임원 선거를 실시한 다음 6시 반 무사히 폐회하였다. 이어서 평의원회를 개최하여 설립총회에서 결정된 의안 및 임원 당선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협회 취지서

지금 세계의 대세는 예전의 대전을 거쳐 현저히 진전하여 강화조약이 새로이 성립되고 국제연맹의 기초가 확립되어 바야흐로 평화의 시기에 들어섰다. 비록 열국의 경쟁은 지금부터 더욱 격심해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생활 문제, 노사문제, 사상문제가 발생하고 이에 더하여 보통선거의 기운이 점차 뜨거워져 사회개조의 목소리가 도처에 선전되고 있다. 국가의 앞길을 우려하고 개인의 행복을 바라는 자는 하루라도 편히 있을 수 없다. 이런 시기에 우리 조선만 태평함에 익숙해져 자칫하면, 이는 온 세계의 형세를 전혀 모르는 것과 같아 실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최근 사태에 깊이 느끼는 바가 있어 이를 우려하는 사람들과 함께 들고 일어나 시국을 바로잡아 동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국민협회를 조직하였다. 많은 사람들의 찬동을 얻어 실력 있는 단체도 만들고 일정한 주의(主義) 밑에 활동하고 강령을 정해 착착 실행을 도모하고자 한다.

뒤집어 생각해보면 일본과 조선 양국의 병립은 과거의 사실이다. 지금은 합체하여 하나의 나라를 이루었다. 일본은 이미 과거의 일본이 아니라, 조선의 토지와 인민을 가진 신일본이 되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일본 민족만의 일본이 아니라, 일선(日鮮) 양 민족의 일본이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과 자각에 입각하여 조선과 일본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없애서 완전한 일가(一家)를 이루어, 견고한 국가를 형성하여 일선 민족 공존의 대의를 완수하고자 한다.

또 우리는 조선과 일본의 구별을 조장하는 현재의 제도에 만족하지 않는다. 합일을 도모하는 일은 실제로는 우리가 산업을 장려하고 교육을 보급시켜 생활의 안정과 인지(人智)의 개발을 도모하여 입헌국민으로서의 자각을 환기시키는 것이다. 또 우리는 자치 관념을 함양하여 참정권의 행사와 지방제도의 개혁을 촉진하고, 나아가 노사의 조화 및 부담의 균형에 대한 계책을 세워 사상 선도와 사회 개량 등 모두 시세에 순응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를 통해 조선 민족의 문화를 향상시키고 행복을 증진시켜 국력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감히 세상에 고한다.

주의

신일본주의

강령

1. 우리 동지는 온 세계의 국면과 시대의 추세를 비추어보아 국민일치의 정신을 발양(發揚)하여 더욱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한다.
2. 우리 동지는 국민의 자각을 호소하여 이를 선도하고, 국가의 강녕과 각 개인의 행복을 도모한다.
3. 우리 동지는 입헌사상의 발달과 민권의 신장을 도모하여 참정권 행사의 시기를 촉진시킨다.
4. 우리 동지는 지방자치의 실시를 촉진시키기 위해 인민에게 자치의 정신을 함양시킨다.
5. 우리 동지는 교육의 발달과 보급을 도모하여 교육기관의 완비를 기한다.
6. 우리 동지는 산업의 진흥과 부원(富源)의 개발을 도모하여 민력을 충실케 한다.
7. 우리 동지는 노사의 조화를 도모하여 상호 이익을 증진시킨다.
8. 우리 동지는 납세 의무를 이행함과 동시에 국민의 부담을 공평히 하도록 한다.

회칙

제1장 조직 및 회원

제1조 본회는 국민협회라 칭하고, 본부를 경성에 두고, 각지에 지부를 둔다.

제2조 본회에 총재를 둔다.

총재는 대회에서 선거한다.

총재는 본 회를 통제한다.

총재 사고 시 회장이 대리한다.

제3조 본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

회장 1인

총무 4인

평의원 30인 이내

간사 약간 명

제4조 회장, 총무, 평의원은 대회에서 선거하고, 임기는 각각 1개년으로 한다.

제5조 회장은 협회 업무를 총리한다.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주요 업무를 처리한다.

평의원은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 간사는 회장이 지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간사는 서무에 종사한다.

제7조 본회에 고문 및 상담역을 둔다.

고문 및 상담역은 총재가 촉탁한다.

제8조 지부의 설치 및 규약은 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본회에 가입하려는 자는 회원 2인 이상의 소개가 필요하다.

제10조 본회를 탈퇴하려는 자는 본부 및 지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원으로서 본회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행위가 인정된 자는 제명한다.

제12조 본회의 경비는 회원의 부담으로 한다.

제2장 대회 및 평의원회

제13조 본회는 각 지부의 대표원 및 본부 임원회를 동일하게 개최한다.

지부의 대표원은 한 지부에 5인 이내, 경성은 15인 이내로 한다.

제14조 본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협회 업무의 대강을 의결한다. 평의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시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 대회의 의장은 총재가 맡는다. 단 의결은 출석원의 과반수에 의한다.

제16조 평의원회는 매년 4회 개최하여 본회의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단 긴급사항이 있을 때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 평의원회는 평의원이 반수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개최할 수 없다.

평의원회의 의장은 매년 제1회 평의원회에서 선정한다.

제3장 조사 및 연구

제18조 본회는 강령의 취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조사, 연구한다.

1. 자치제도
2. 교육제도
3. 산업정책
4. 노동문제
5. 소작제도
6. 조세 및 공과(公課)
7. 공구(共救)조직
8. 풍속 및 관습
9. 민도 및 민력
10. 사회정책
11. 공공사업
12. 경제상황
13. 기타 필요한 사항

부칙

본 회칙은 대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변경할 수 없다.

서무, 회계, 기타와 관련한 세부 회칙은 평의원회의 회의를 거쳐 총재가 결정한다.

1920년 1월 18일

임원 당선자 명단

회 장 : 민원식(閔元植)

총 무 : 김명준(金明濬), 정병조(鄭丙朝), 황석교(黃錫翹), 권태전(權泰銓)

평의원 : 이겸제(李謙濟), 한기준(韓基準), 이동우(李東雨), 김우식(金禹植)

장영한(張永翰), 이영석(李永錫), 문창규(文昌奎), 김환(金丸)

김형복(金亨復), 양건식(梁建植), 강성구(康星九), 백대진(白大鎭)

박정래(朴廷來), 이교헌(李敎憲), 이수용(李秀龍)

(3) 사업 개요

① 시국강연회 개최

국민협회는 음양을 가리지 않고 민심을 선도하여 시국 수습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진정으로 일선 양 민족의 공존공영을 도모하여 영원한 이익, 행복 및 권리의 향유에 기하고자 한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회장 민원식 씨는 몸소 남선북마(南船北馬)하여 각 지방을 돌아다니며 강연회를 개최하여 최선을 다하여 ‘신일본주의’의 선전에 힘을 쏟아, 각 지방 모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공감자도 많아 오히려 예상 이외의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각지의 강연회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평안남도 평양

1920년 3월 23일	오후	평안극장(조선어)
	밤	평양연무장(일어) ¹⁶⁾

2. 함경남도 함흥

1920년 5월 16일	오후	만세관(조선어)
	밤	함흥상업학교(일어)

3. 경상남도 부산

1920년 5월 19일	오후	초량철도구락부(조선어)
--------------	----	--------------

4. 충청남도 공주

1920년 11월 9일	밤	공주구락부(일어)
11월 10일	오후	금강관(조선어)

5. 충청북도 청주

1920년 11월 12일	오후	사쿠라극장(櫻座)(조선어)
	밤	사쿠라극장(일어)

6. 전라북도 전주

1920년 11월 14일	오전	전주극장(일어)
	오후	전주극장(조선어)

16) 원문에는 ‘國語’로 쓰여 있으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어’로 수정하였다. 이하 일어는 같은 이유로 수정한 것임.

- | | |
|------------------|------------------------|
| 7. 전라남도 광주 | |
| 1920년 11월 15일 오후 | 광주보통학교(일어) |
| 16일 오후 | 광주보통학교(조선어) |
| 8. 충청남도 대전 | |
| 1920년 11월 17일 오후 | 무덕관(武德館)(조선어) |
| 18일 오전 | 무덕관(일어) |
| 9. 강원도 춘천 | |
| 1920년 12월 5일 오후 | 춘천보통학교(조선어) |
| | 춘천보통학교(일어) |
| 10. 경상남도 진주 | |
| 1920년 12월 8일 밤 | 진주소학교(조선어) |
| 9일 밤 | 진주소학교(일어) |
| 11. 경상남도 마산 | |
| 1920년 12월 10일 밤 | 구 마산수극장(馬山壽座)(조선어) |
| 11월 오후 | 마산실과여학교(일어) |
| 12. 경상남도 부산 | |
| 1920년 12월 13일 오후 | 부산보통학교(조선어) |
| 밤 | 부산 동본원사 별원(일어) |
| 13. 경상북도 대구 | |
| 1920년 12월 14일 밤 | 대구 간화회(懇話會) 환영회 석상(일어) |
| 15일 오후 | 대구관(조선어) |
| 밤 | 대구 재향군인 집회소(일어) |

② 참정권 요구청원(제1회)

국민협회는 현재 정세에 깊이 우려하여 민심을 바로잡고, 시국을 수습할 방도에 부심한 결과, 조선인이 일본제국의 신민이라는 자각을 갖는 것이 근본책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러한 자각을 훌륭하게 환기시키는 데는 조선인을 국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중의원 의원의 선거권을 부여할 수밖에 없다고 믿는다. 이에 따라 협회는 ‘조선에 중의원의원선거법의 시행을 바란다’라는 청원서를 동지 106명의 연서로 제42회 제국의회

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1920년 1월 24일 협회장 민원식은 청원서를 가지고 도쿄(東京)에 건너갔다. 청원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청원서(제1회)

주지

중의원 의원 선거법을 조선에 시행하기를 바란다.

이유

조선 현재의 민정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이러한 상태로 나아가면 단순히 국가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실로 조선인에게도 지극히 불행하다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일본제국의 앞날과 조선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면 하루도 평안히 지낼 수 없다. 따라서 거듭 생각하여 미력하나마 동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 국가를 위해 공헌할 것이 없는지 밤낮으로 동지들과 함께 민심의 구치(救治) 방법에 부심하였다. 이에 신중히 심의한 결과 청원하기로 결의하였다.

생각건대 일한 양국의 병합은 실로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오늘날 이를 바라보더라도 일반 조선인은 조선 민족 자존의 방법으로 달리 다른 길이 없었다고 양해할 수 있는 바이다. 그렇다고 해도 병합의 결과 조선인으로서 기대에 어긋나는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름 아닌 일본 국민이라는 자각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즉 조선인이 비록 일본 민적(民籍)에 들어갔을지라도 국민으로서 내지인¹⁷⁾과 동일한 지위에 서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지 못하다. 환언하자면 병합에 의해 일선은 일가(一家)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인은 가족의 일원이라는 자각을 하지 못하고 마치 다른 집에 기숙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결과는 나아가서는 국가 관념을 결핍시켜 일본은 다만 일본 민족의 일본으로, 조선은 일본 민족의 조선으로서 조선인은 단지 망국의 유민으로서 일본의 통치를 받는 것처럼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저희들이 조선의 민심이 안정되지 않고 제반 시설에 대해 시기와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 것은 필경 이것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믿고, 민심을 구치(救治)하는 근본방책은 조선인이 일본 국민과 대등하다는 자각을 환기시키는 데 있다고 통감한다.

조선통치의 근본은 조선인의 동화에 있다. 총독부 또한 일시동인(一視同仁)의 성지(聖

17) '내지인(內地人)'은 일본인을 뜻함.

1)를 받들어 조선인과 일본인 차별 철폐의 실현에 노력하고 있다. 조선인 관리의 대우를 개선하고 임용의 범위도 넓혔다. 언론의 자유를 인정하고 언론기관을 만들어 민의창달의 길을 열었다. 점차적으로는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할 것이고, 정치에 관한 집회결사에 대해서도 가까운 시일 안에 해금할 방침인 것 같다. 저희들도 당국이 고심하는 바를 알기에 충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한다. 그러나 한발짝 물러나 생각하면 이는 모두 조선인에 대한 덕정(德政)에 다름 아니다. 조선인은 다만 수무(綏撫)의 은택(恩澤)을 입었다고 말할 수 있을 뿐 일본제국의 정치에 관해 조선에 거주하는 인민은 참여하지 못한다. 즉 일본에서는 각 지방 주민 모두는 의원을 선출하여 국정에 참여할 수 있지만, 조선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환언하면 조선의 주민은 단지 통치를 받으며 장차 자치를 이룰 수 있다는 희망뿐 스스로 국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저희들은 일본 헌법하에서 참정권이 국민의 가장 중요한 권리라는 것과 조선에 관한 이해(利害)의 문제일지라도 모든 것은 내지에서 선출된 의원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조선인이 국민으로서 자각할 수 없는 커다란 장애는 바로 이 점에 있다. 참정권의 부여는 조선인이 국민이라는 자각을 환기시킬 유일한 방법인 동시에 민심을 수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또한 바로 여기에서 찾아야 한다고 확신한다.

조선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때로는 시기상조라고 말한다. 그 이유는 주로 조선인의 생활 정도와 지식의 정도를 근거로 삼아 교육의 보급 및 정도, 국비 부담 능력, 병역의무의 유무 등으로 여기에 연관된 조건을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저희들은 이에 대해 병역의무의 부담은 조선인의 고통으로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에게 징병령을 적용한다면 오히려 국민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게 될 것이다. 반감을 일으킬 여지를 남기는 것과 조선인을 병사로 참여시키는 것을 결코 위험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해두고 싶다. 실제로 조선에서 약간의 의원을 선출하는 것에 대해 조선인 가운데 의원으로 적합한 자가 없다고 믿지 않는다. 또 선거하는 인민도 선거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거의 없다. 더군다나 이후 언론, 집회, 결사 등의 해금에 따라 정치사상의 개발과 통제가 필연적으로 이루어져 선거에 대한 깊은 관심이 일어날 것이다. 특히 이 문제는 조선인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피선거인 및 선거인 중에는 다수의 일본인을 포함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여 인민의 정치적 훈련을 쌓을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일본의 홋카이도와 오키나와현과 같은 사례가 있지만, 저희들은 자치제도의 경험을 참정권 부여의 절대적 요건이라고 이해하지 않는다. 일본의 선례는 오늘날의 시세에 비추어 오히려 적합하지 않다. 반대로 세계의 대세를 보면 과거의 대전을 거치면서 일반의 사조는 최근 현저하게

변화하였고 인민의 정치적 요망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또한 보통선거의 목소리가 이미 도시와 시골에 두루 퍼져있다. 홀로 조선인만이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 참정권을 갖지 못하고 있다. 국가의 기관으로서 국정을 논의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탄식이 없지 않다. 조선인에게 국민으로서의 자각을 일깨울 수 있는 방법은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보다 시급한 일은 없다. 우리는 참정권의 부여를 조선인 동화의 근본 의의로 삼음과 동시에 지금의 민심을 수습할 긴급한 대책으로서 조선에 중의원의원 선거법을 시행할 것을 절실히 바라 마지않는다. 굳이 구구한 개인적인 정으로 청원하는 것이 아니다. 조선 민족의 앞날에 광명을 비추고 몸과 마음을 닦아 견실한 일본 국민이 됨으로써, 국운의 융성에 도움이 되어 일본 국민으로 행복을 누리고 싶을 뿐이다.

이를 청원한다.

1920년 1월

민원식(閔元植) 외 105명 연서

이 청원서는 정우회(政友會) 소속 중의원 의원 마키야마 고조(牧山耕藏), 오카다 사카에(岡田榮), 사이토 게이치(齊藤珪次) 3명의 소개를 받아 중의원에 제출되었다. 1920년 2월 23일 중의원 청원 제1분과 회의에서 논의되었지만, 청원의 취지는 이해하나 그 실행 시기에 고려의 여지가 있다며 아무튼 청원의 정신을 존중하여 정부에 참고사항으로 송부가 결정되었다. 하지만 본 청원이 채택될 무렵 의회의 해산 때문에 기회를 잃은 것은 심히 유감이다.

③ 시사신문 발간

국민협회는 기관지로 1920년 4월 1일 시사신문 제1호를 발간하였다. 이후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건투하여 오늘날에 이르렀다. 사운(社運)이 날로 융성하고 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 기초를 공고히 하여 설비를 확장하고 내용을 충실히 함으로써 반도 언론계에 웅비할 것을 기대한다. 창간 당시의 광고문 및 신문사 간부 및 서명인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일선양문(日鮮兩文)병용

일간 『時事新聞』

4월 1일 초판 발간

대세의 추이에 순응하고 시대의 요구에 따라 본지를 창간한다. 공의(公議)와 당론(黨論)으로 사회의 목탁이 되어 사상의 선도, 사회의 개량에 힘써 우리 민족의 문화를 향상하고 행복을 증진시켜 더욱 국력의 발전에 공헌하고자 한다. 세상에 우리의 미의(微意)를 이해하여 애독을 바라 마지않는다.

1920년 3월

시사신문 사장 민원식

신문지 정가

1매	금 3전
1개월분 선금	금 60전
동 우송료 포함	금 75전
3개월분 우송료 포함	금 2원
6개월분 우송료 포함	금 4원
1개년분 우송료 포함	금 8원
우권(郵卷) 대용	10% 증가

광고요금

5호 활자 14자 1행	금 1원 10전
5등 특별광고	금 2원 20전
2호 활자 7자 1행	금 2원 20전
4호 활자 9자 1행	금 1원 70전
장소 지정	50% 증가

본지는 수만 부를 인쇄하여 전 조선을 비롯해 널리 내외 각지에 배포하여 광고의 효력이 아주 크다. 초판 게재 광고신청 기한은 3월 28일까지이다.

경성부 장곡천정(長谷川町) 96번지
시사신문사
전화 1704번
우편 대체 예금 경성 7929번

시사신문사 간부

사장 : 민원식

부사장 : 김명준(金明濬)

주간 : 이동우(李東雨)

편집국 주임 : 김환(金丸)

경리국 주임 : 방한복(方漢復)

전무이사 : 히사노 시게요시(久納重吉)

동(同) 서명인

발행 겸 편집인 : 이동우(李東雨)

인쇄인 : 김형복(金亨復)

동(同) 발행소

경성부 장곡천정 96번지

④ 참정권 요구청원(제2회)

국민협회는 어디까지나 조선인 참정권 요구의 목적을 관철시킬 결심으로 다시 청원서를 제국의회에 제출하였다. 이번에는 동지 614명의 연서를 받아 제43회(특별) 의회의 개회에 맞추어 1920년 6월 먼저 협회 총무 이동우 씨가, 이어서 협회장 민원식 씨가 도쿄로 갔다. 제2회 청원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청원서(제2회)

주지

중의원의원선거법을 조선에 시행하기를 바란다.

이유

우리는 조선의 현상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제42회 의회 개회에 즈음하여 의사를 피력하고 청원했지만 때마침 해산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이번에 다시 청원하기에 이르렀다.

병합 이래 정부는 예의(銳意) 조선의 개발에 노력하여 그 결과는 현저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인 또한 성의와 신정(新政)의 혜택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작년 봄 소요가 일어난 후 민심의 안정이 깨뜨려져 조선의 앞날은 아주 우려할 만한 사태에 이르렀다. 지금 근본적 해결책을 취하지 않으면 아마도 조선은 영원히 난치(難治)의 지방이 될지도 모른다. 저희들은 미력하나마 동지와 함께 현하 민심을 내선일가(內鮮一家)의 기초를 확립하는 데 밤낮으로 대책에 부심하였다.

생각건대 일한 양국의 합일은 부득이한 귀결로 일반 조선인도 이전부터 양해하고 있는 바이다. 하지만 여전히 내심 일본의 치하에 있다는 것을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아 자칫하면 반국가적 언동을 일부러 일삼는 자가 있다. 특히 나이 어린 학생 중에 이에 부하 뇌동하는 자가 있다는 것은 실로 태평한 세상의 불상사이다. 이는 필경 일본 국민이라는 자각이 없기 때문이다. 즉 일본은 조선을 멸망시켰고, 조선인은 단지 망국의 유신(遺臣)으로서 그 통치를 받을 뿐이라는 감상이 오래도록 조선인의 뇌리에 남아있다. 조선통치의 장애는 언제나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이를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는다면 어떠한 선정(善政)일지라도 그 효과는 아마 없을 것이다. 우리는 조선통치의 근본 방책은 조선인으로 하여금 일본 국민이라는 자각을 환기시키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통감한다. 현재의 민심을 수습할 수 있는 방책 또한 바로 이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뒤돌아 생각해보면 국민이라는 자각은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비로소 생겨난다. 그런데 조선인은 국민의 중요한 권리인 참정권이 없다. 즉 제국의회가 있고 일본에 거주하는 인민은 선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원을 선출하여 국정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에서는 선거법이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의원을 선출할 수도 없다. 조선에 관한 사항일지라도 모두 일본에서 선출된 의원에 의해 결정된다. 환한하자면 일본제국의 정치는 일본인의 정치로 조선인은 전혀 참가할 수 없다. 우리는 조선인이 국민이라는 자각을 갖지 못하는 원인이 바로 이 점에 있다고 생각한다. 참정권 부여가 가장 급선무임과 동시에 하루라도 빨리 부여할 문제이다.

혹자는 조선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한다. 하지만 참정권은 국민이 당연히 향유할 권리로 그 요건은 국법이 정하는 바이다. 이미 조선은 일본의 영

토이고 조선인은 일본제국의 신민인 이상 이를 제외해야 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그 실행의 여부, 이익과 폐단이 어디에 있는가에 있다. 우리는 조선인 가운데 의원에 적합한 자가 없다고 믿지 않는다. 또 선거를 실시하면 곤란한 점이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전후 세계는 인류의 정치적 각성을 촉구하고, 일반 사조는 현저히 진전하였다. 참정권의 요망은 단순히 민권의 신장만을 말하지 않는다. 민중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시키는 것은 오히려 인민으로 하여금 정치적 책임을 자각시켜 국가 관념을 공고히 만드는 길이다. 당로(當路)에서도 이미 조선에서의 지방자치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 준비로 지방자문기관을 설립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시기에 정부의 방침을 결정하여 조선에 선거법을 시행할 것을 명시하여, 조선 2천만 민중으로 하여금 의혹을 없애고 국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확신하에 일본 국민이라는 자각을 환기시켜 진충보국(盡忠報國)으로 신민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기를 절실히 바란다.

이를 청원한다.

1920년 7월

민원식 외 613명 연서

이 청원서는 정우회(政友會) 소속 중의원 의원 마키야마 고조(牧山耕藏), 세이킨 타로(清峯太郎) 소개로 같은 해 7월 8일, 귀족원에서는 오쿠보 도시다케(大久保利武)의 소개로 7월 14일에 제출되었다. 의회에서 하라(原) 내각총리대신은 본 청원의 정신에는 동의할 표명했지만, 아직 실행의 시기에 고려의 여지가 있다며 시기문제라는 뜻을 밝혔다. 또 정부위원인 미즈노(水野) 정무총감은 조선에서는 이번에 새로이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으므로 그 성적 여하를 본 다음 청원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답변하여 결국 채택되지 못하고 폐회되었다. 아무튼 실행의 시기는 당분간 다른 문제이고 참정권 부여의 선명(宣明)만은 하루라도 빨리 얻어야 한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노력하여 본 청원의 목적을 관철시킬 각오이다.

⑤ 대회 및 평의원회

1920년 1월 18일 국민협회 설립총회에 이어 회칙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회를 개최하여 협회의 대강에 관한 사항을 의정하였다.

- (제2회) 임시대회 1920년 3월 13일 오후 2시, 본부, 출석자 63명
- (제3회) 임시대회 1920년 4월 14일 오후 4시, 본부, 출석자 35명
- (제4회) 임시대회 1920년 6월 24일 오후 4시, 본부, 출석자 45명
- (제5회) 임시대회 1920년 9월 30일 오후 4시, 본부, 출석자 40명
- (제6회) 정기대회 1921년 1월 18일(창립 1주년) 오후 3시, 경성부 정동 25번지 민회장 자택, 출석자 100여 명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과거 1년간 중요 협회업무 경과보고, 회칙 일부 개정, 기타 결의, 임원 새로 선출, 정무조사위원 선거(평의원회에 일임) 등을 한 다음 일부 회원의 연설이 있었다. 7시 반 폐회, 이어서 일동 민회장이 베푼 만찬회에 참석했다.

또 평의원회는 회칙의 규정에 의거하여 중요사항 의결 등을 위해 정기 및 임시로 개회하여 항상 협회업무의 활발과 진척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⑥ 회칙 중 개정

임시 및 정기대회의 결의를 거쳐 국민협회 회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1. 회칙 제3조 중 ‘총무 4인’을 ‘총무 7인’으로 개정하였다. 이는 1920년 4월 14일 제3회(임시) 대회에서 결의하였다.
2. 회칙 ‘제12조 본 회의 경비는 회원이 부담한다’를 ‘제12조 본 회의 경비는 회원의 부담으로 하고, 연 현금 2원 이상 10원 이내로 정한다. 단 납입기한은 매년 6월 및 12월말로 한다’로 개정하였다. 이는 1920년 9월 30일 제5회(임시) 대회에서 결의하였다.
3. 회칙 제3조 중 ‘회장 1인’의 다음에 ‘부회장 1인’이라는 1항을 삽입하였다.
회칙 제5조 제1항의 다음에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에 이를 대리한다’는 1항을 삽입하였다.
회칙 제17조 끝에 ‘단 긴급사항이 있을 경우는 평의원회의 결의로 대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를 삽입하였다.
4. 회칙 제18조 제2항의 다음에 ‘정무조사위원회를 둔다’는 1절을 추가하였다.
이는 1921년 1월 18일 제6회(정기) 대회에서 결의하였다.

⑦ 지부 설치

국민협회는 차츰 회세(會勢) 확장과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조선 각 도 중요지에 각각 지부를 설치하여 지방의 찬동자를 회원으로 망라하였다. 현재 지부는 다음과 같이 평양, 공주, 대구, 광주, 마산 5개소에 있고 기타 각 지방에도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가. 평안남도 평양

국민협회 평남지부, 1920년 4월 26일 창설

지부장 : 김관선(金寬善)

총 무 : 조정옥(趙貞昱), 김성수(金性洙), 김훈석(金薰錫)

평의원 : 김병현(金秉鉉), 김성수(金性洙), 오훈한(吳雲漢), 김응현(金應鉉), 김영석(金永奭), 박운필(朴潤弼), 임필주(林弼周), 이성훈(李成勳), 김성민(金成珉)

간 사 : 이응무(李應茂), 박중원(朴鍾元), 양제노(楊濟櫓), 오선주(吳善柱), 구상조(具相祖), 양석조(楊奭朝), 김두현(金斗鉉), 박위진(朴胃鎭)

나. 충청남도 공주

국민협회 충남지부, 1920년 11월 10일 창설

지부장 : 김갑순(金甲淳)

총 무 : 강영주(姜永周), 이상두(李象斗), 노원하(盧源河)

평의원 : 최동석(崔東錫), 양재숙(梁載淑), 심상익(沈相益), 김순필(金淳弼), 김종현(金鍾憲), 백덕중(白德仲), 김기홍(金基鴻), 박원직(朴元直), 김필수(金弼洙), 김자유(金子有)

다. 경상북도 대구

국민협회 경북지부, 1920년 12월 16일 창설

지부장 : 윤필오(尹弼五)

총 무 : 이병학(李柄學), 서병조(徐丙朝), 서병운(徐丙允)

간 사 : 이갑중(李甲重), 정학진(鄭鶴鎭)

평의원 : 김영두(金榮斗), 유근수(劉根洙), 장상철(張相轍), 박필현(朴必賢), 강기원(姜琪元), 이정희(李廷禧), 박성주(朴性宙)

라. 전라남도 광주

국민협회 전남지부, 1920년 12월 25일 창설

지부장 : 김형옥(金衡玉)

총 무 : 정수태(丁秀泰), 오헌창(吳憲昌), 이정상(李政相), 최상진(崔相鎭)

평의원 : 오석유(吳錫裕), 최상현(崔相鉉), 정근섭(丁根燮), 어운빈(魚允斌), 주하영(朱賀永), 김상덕(金商德), 임봉주(林鳳柱)

평의원장 : 어운빈(魚允斌)

마. 경상남도 마산

국민협회 마산지부, 1921년 1월 10일 창설

지부장 : 이현교(李鉉教)

부지부장 : 서상원(徐相源)

총 무 : 이수형(李壽亨), 팽석만(彭錫萬), 정대근(丁大根)

평의원 : 황중주(黃中周), 정덕필(鄭德弼), 김상범(金相範)

고 문 : 배석관(裴錫觀)

간 사 : 김정대(金正大), 전치환(鄭致煥), 강재수(姜在守, 상무)

⑧ 본부 소재지

국민협회 본부는 당초 경성부 견지동 111번지에 두었지만, 1920년 9월 3일 현재 장곡천정(長谷川町) 96번지(시사신문사 내)로 이전하였다.

⑨ 현재 임원 명단 및 회원 총수

국민협회 임원은 창립 이후 많은 이동이 있었는데, 현임자 명단 및 회원 총수는 다음과 같다.

회 장 : 민원식(閔元植)

부회장 : 김명준(金明濬)

총 무 : 정병조(鄭丙朝), 이겸제(李謙濟), 이창환(李昌煥), 강인우(姜麟祐), 전창수(全昌壽), 편상영(片尙永), 한재찬(韓在璨)

평의원 : 한영원(韓永源), 서병협(徐丙協), 김우식(金禹植), 이봉구(李鳳九), 문창규(文昌奎), 윤교중(尹敎重), 서윤경(徐允京), 승관하(承觀河), 장영수(張永翰), 이홍묵(李鴻默), 김상회(金尙會), 이기세(李基世), 윤석준(尹錫準), 방한복(方漢復), 조병렬(趙炳烈), 한택리(閑宅履), 윤병익(尹炳翼), 유원중(劉元鍾), 유조환(柳朝桓), 민병조(閔丙朝), 정필화(鄭弼和), 오경묵(吳敬默), 민흥식(閔興植), 이영석(李永錫), 조이균(趙彝均), 손태순(孫泰順), 신두희(申斗熙), 김구성(金龜性), 박종구(朴鍾九), 강봉한(姜鳳漢)

간 사 : 박정래(朴廷來, 상임) 외 56명

국민협회 회원 총수 : 1,694명(1921년 1월 18일 현재)

⑩ 창립 1주년 기념 시국대강연회 및 기념식

국민협회는 1921년 1월 18일 창립 만 1년이 되었다. 별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이날 민회장 저택에서 대회를 개최하여 금후 활동과 기타 협회업무에 대해 논의하고 회칙 개정 및 임원 개선(改選) 등을 실시하였다. 또 회장 민원식 씨는 1월 19일 밤 경성기자단을 자택으로 초대하여 1주년 기념만찬회를 열었다. 협회는 다음과 같이 시국강연회 및 기념식을 거행하였다.

가. 창립 1주년 기념 시국 대연설회

1921년 1월 22일 오후 1시부터 일어로, 23일 오후 1시부터 조선어로 경성 장곡천정 경성공회당에서 국민협회 창립 1주년 기념 대연설회를 협회 주최로, 조선신문사 및 시사신문사 후원으로 개최하였다. 연사로는 회장 민원식 외 8명이 출연하였다.

나. 창립 1주년 기념식

1월 29일 오후 1시부터 경성공회당에서 성대한 창립 1주년 기념식을 거행하였다. 중요 내선(內鮮) 관민 및 협회 관계자 등 수백 명을 초대하였다. 민회장의 이름으로 각각 안내장을 발송하였다.

(4) 회세(會勢) 발전의 대강 및 현상 개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국민협회는 1920년 1월 18일 창립되었지만, 그 전신인 협성구락부 시대에는 회원수가 30명 내외에 불과하였다. 이 조직을 변경하여 협회의 발회식을 거행하자 당시 회원은 약 100명으로 증가하였고, 같은 해 8월 무렵에는 약 400명에 달했다. 9월 이후 연말까지 4개월간 회원은 현저하게 증가하여 창립 만 1주년인 오늘 현재 1,700명을 헤아린다. 날로 팽창하는 본 협회의 정신이 점차 일반의 이해를 얻어 앞으로 더욱 회원이 증가할 것이다. 1921년 상반기에는 적어도 무려 3만 명에 달할 전망이다.

협회는 창립 이후 만 1주년이 되었고 앞으로도 더욱 발전할 것이며, 존재를 세상에 인식시켜 반도의 정치계 및 사상계에서 하나의 세력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별항과 같이 1921년 1월 29일 창립 1주년 기념식을 거행하고 더욱더 용기를 내어 해마다 새로운 활동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회원 중에는 내지에서 전문교육졸업생 등 지식계급에 속하는 자가 약 100명, 도 및 면 평의원 등 공직자 약 70명, 유력 실업가 및 명망가 등 약 200명이 있다. 또 협회 간부로 준수직에 오른 자 3명이 있다. 이와 같이 협회는 앞으로도 더욱 견실한 다수의 회원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의외의 방면에서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람도 나와 새로운 동지를 맞이하게 될 것이어서 대단히 마음이 든든한 바이다.

협회의 기관인 시사신문은 협회 세력의 발전과 시대의 진보에 따라 사운이 점차 진흥하여 발행부수도 날로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 규모의 대확장이 당면한 초미의 급무로 현재 기획을 진행 중이다.

요컨대 우리 국민협회의 세력은 순조롭게 발전, 신장하고 있다. 하지만 창립 후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아 앞길이 요원하다. 회원은 더욱 의사와 단결을 공고히 하여 협회의 기초를 확립함과 동시에 충분한 실력을 함양하고 더욱더 분투, 노력함으로써 주의, 주장을 관철하고 달성하여 우리의 대사명을 다하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국민협회사 제1 끝

1921년 1월 18일
국민협회 본부
경성부 장곡천정 96번지

〈출전 : 國民協會本部, 『國民協會史』 제1, 1921년〉

3) 국민협회 소식

[3-1]

1922년 4월

국민협회는 내선차별을 철폐하여 조선에 참정권을 부여함으로써 이천만 민중으로 하여금 국민된 권리와 의무를 행사케 하고자 꾀기하였다. 국민협회는 현재 지부 15개소, 회원은 1만여 명에 이르러 그 주의와 목적에 대하여 착착 활동을 계속해 온바 이번 봄에는 실시방법을 직접 내각에 요구하기 위하여 각 지방 대표자 1만여 명의 연서로 건백서를 내각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다시 이 목적을 관철하기 위하여 국민협회 회장 김명준, 총무 김상희, 서병협, 평의원 김환, 정무조사위원 윤기현(尹冀鉉), 간사 윤태섭, 진주지부장 이진우, 지부 총무 최두환, 구성지부 총무 김창락 등 9명은 지난 3월 11일 경성 출발하여 도쿄로 가서 다카하시 쇼노스케(高橋章之助) 수상과 중앙정부 당국자와, 정우(政友), 헌정(憲政), 국민당(國民黨)의 각 정당 영수를 차례로 방문하고 주의와 주장을 개진, 설명하였다. 그 결과 다카하시 쇼노스케(高橋章之助) 수상의 '정부는 내지 연장주의의 근본방침에 의하여 속히 군(君) 등이 요구하는 바의 참정권을 조선에 실시하고자 하노라'하는 언명과 기타 각 정부 유력자 및 정당 유력자의 철저한 양해를 얻고 지난 달 말에 경성으로 돌아왔는데 현재 협회의 본부 임원 및 각 지부 임원이 다음과 같더라.

회 장 : 김명준(金明濬)

부회장 : 정병조(鄭丙朝)

총 무 : 김상희(金尙會), 서병협(徐丙協)

간 사 : 박정래(朴廷來), 윤석준(尹錫準), 송정용(宋廷龍)

평의원장 : 김우식(金禹植)

평의원 : 김 환(金丸), 박정래(朴廷來), 윤석준(尹錫準), 이영석(李永錫), 장영한(張永翰), 조이균(趙彝均), 최 탁(崔鐸), 이기세(李基世), 위종기(魏鍾冀), 김석진(金錫晉), 배영숙(裴永淑), 함희창(咸熙昌), 한문관(韓文寬), 한택리(閑宅履), 김봉수(金鳳洙), 김찬정(金贊楨)

상담역 : 고희준(高義駿), 이동우(李東雨)

정무조사위원장 : 고희준(高羲駿)

정무조사 위원 : 이겸제(李謙濟), 한영원(韓永源), 김태영(金泰榮), 유완중(劉玩鍾), 이
정세(李正世), 윤기현(尹冀鉉), 박기원(朴基源), 강엽(姜曄)

－ 평남지부(평안남도 평양부 창전리)

지부장 : 문봉의(文鳳儀)

부지부장 : 조규남(趙奎南)

총 무 : 김훈석(金薰錫), 김영석(金永奭), 조정옥(趙貞昱)

평의원 : 최순정(崔順貞) 외 9인

간 사 : 한효원(韓孝源) 외 8인

－ 수원지부(경기도 수원부 수원면 신흥리)

지부장 : 우성현(禹成鉉)

부지부장 : 윤성구(尹聖求)

총 무 : 윤완영(尹完榮), 김현상(金顯相), 지공숙(池公淑)

평의원 : 지하영(池河永) 외 9인

간 사 : 이경의(李敬儀) 외 2인

－ 간도지부(북간도 용정촌)

지부장 : 최상익(崔相翊)

부지부장 : 홍자문(洪子文)

총 무 : 조봉래(趙鳳來), 이두현(李斗現), 김정훈(金鼎勳), 이병현(李秉鉉), 조동일(趙
東一), 안동철(安東哲), 전제용(全濟容)

평의원 : 김수구(金秀九) 외 29인

－ 충남지부(충청남도 공주군 공주면 본정)

지부장 : 김갑순(金甲淳)

총 무 : 이상두(李象斗), 강영주(姜永周)

평의원 : 최동□(崔東□) 외 13인

간사 겸 상담역 : 정용구(鄭用九)

간 사 : 윤만조(尹萬祚)

- 마산지부(경상남도 마산부 만정)

지부장 : 서상원(徐相源)

총 무 : 팽석재(彭錫才), 이태형(李泰亨)

평의원장 : 이현교(李鉉教)

평의원 : 정대근(丁大根) 외 2인

상무간사 : 김종관(金鍾觀)

간 사 : 강재수(姜在洙)

서 기 : 심타관(沈他寬)

-곡성지부(전라남도 곡성군 읍내)

지부장 : 황덕순(黃德純)

총 무 : 신창희(申昌熙), 조병흠(曹秉欽)

평의원 : 정주태(丁柱泰) 외 6인

간 사 : 유을묵(柳乙默) 외 10인

-함남지부(함남 함흥군 함흥면 동평리)

지부장 : 주규운(朱圭運)

부지부장 : 최달빈(崔達斌)

총 무 : 한헌교(韓憲教), 이봉한(李鳳翰), 한화□(韓和□)

평의원 : 한장숙(韓章淑)

간 사 : 이환기(李煥基)

고 문 : 홍상의(洪相儀)

-구성지부(평북 구성군 구성면 좌부동)

지부장 : 김응한(金應漢)

부지부장 : 이익서(李益鉏)

총 무 : 김창락(金昌洛), 김재희(金載熙)

평의원장 : 전항련(全恒鍊)

평의원 : 차상직(車相稷) 외 13인

간사장 : 차운석(車運錫)

간 사 : 김정중(金鼎鍾)

-안변지부(함남 안변군 문산면 구령리)

지부장 : 최달빈(崔達斌)

부지부장 : 최응호(崔應鎬)

총 무 : 최용학(崔庸鶴), 황진오(黃鎭五)

평의원 : 차성철(車成轍) 외 14인

간 사 : 김경술(金瓊述) 외 6인

상담역 : 김현겸(金鉉謙) 외 4인

-경남 총지부(경남진주군 진주면 영정)

지부장 : 이진우(李珍雨)

부지부장 : 정규용(鄭圭鎔)

총 무 : 최두환(崔斗煥), 허협(許協), 김동식(金東式), 정흔묵(鄭昕默)

평의원장 : 박재화(朴在華)

평의원 : 박영두(朴永斗) 외 14인

간 사 : 김호채(金湖采) 외 7인

- 평북지부(평북 의주군 의주면 동부동)

- 경북지부(경북 대구부 명치정)

- 전남지부(전남 광주군 광주면 회기옥정)

- 강계지부(평북 강계군 강계면 서부동)

- 송화지부(황해도 송화군 송화면 읍내리)

이상 5개소 지부는 임원 보고가 도착하지 않았음.

<출전 : 국민협회소식, 『時事評論』 창간호, 1922년 4월>

[3-2]

1922년 5월

- 지방자치제 조사 시행 준비: 동 회가 연래(年來)로 주장한 지방자치제의 실시기를 촉진하기 위하여 동 회의 정무조사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제에 관한 제(諸) 법규 및 제도를 토구(討究)¹⁸⁾하여 목하 조사 기안 중이므로 원안 완결을 마친 후에는 이를 당국에 제출하여 그 시행을 요구할 터이라더라.

- 안변지부 축제단 입경(入京): 국민협회 안변지부 주최인 조선 내지 시찰단 최달빈 씨 이하 49명(여자 7명)은 이 달 5일 입경(入京)하여 창덕궁과 기타 각 관공서 및 명승지를 참관하고 이 달 10일에 퇴경하였다. 재경 본부회장 이하 간부 일동은 단원 일동을 환영하기 위하여 본월 7일 오후 5시부터 대관원(大觀園)에 만찬회를 개최하고 주객 70여 명이 성황리에 간담을 거듭하였다더라.

- 평남지부 임원 개선: 국민협회 평남지부에서는 4월 30일 정기총회를 열고 전기 회록보고와 금후 시국에 대한 활동방침과 사업 종목에 대한 결의를 마친 후 임원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다더라.

회 장 : 문봉의(文鳳儀)

부회장 : 강봉익(姜鳳翼)

총 무 : 조정옥(趙貞昱), 김창순(金昌淳), 김관선(金寬善), 이병연(李秉淵), 김영식(金永奭)

평의원 : 김훈석(金薰錫) 외 14인

간 사 : 이병수(李秉洙) 외 8인

〈출전 : 국민협회소식, 『時事評論』 2호, 1922년 5월〉

18) 사물의 이치를 따져 연구함.

[3-3]

1923년 3월

- 고(故) 전(前) 민회장의 추도회: 1923년 2월 7일 오후 4시 반부터 경성 공회당에서 고 전회장 민원식 씨의 3주년 추도식을 거행하였다. 승려의 통경(通經)에 이어 회장 김명준 씨가 추도문을 낭독하고 도쿄에 있는 도쿄나미(床次) 정우회 총무, 우사미(宇佐美) 동경부지사, 아카이케(赤池) 경시총감, 예기(江木) 귀족원 의원, 기타 다수 명사의 추도의 전보와 각 지방에 있는 회원 및 고구(故舊)¹⁹⁾의 추도 전보를 낭독하고 미망인의 분향에 이어 친족 제 씨의 분향이 있었다. 니시무라(西村) 식산(殖産), 오오츠카(大塚) 내무(內務), 마루야마(丸山) 경무(警務) 각 국장과 쿠도(工藤) 경기도지사, 오다(小田) 중추원 서기관장, 구기모토(釘本) 경성상업회의소 회두(會頭) 이하 각 관민 유지의 분향이 있은 후 회장 이하 각 회원의 분향이 끝난 후 식을 폐하니 때는 오후 5시 반경이오 내회한 인원은 3백여 명이더라.

- 참정권 요구 건백 제출: 1921년 3월 6일에 동지 1만 2천 6백여 명의 연서를 얻어 다음 참정권 요구의 건백서를 조선총독부를 경유하여 내각총리대신 카토 토모사부로(加藤友三郎)에게 제출하였더라.

- 건백서: 정부는 조선 2천만 민중의 요망에 응하여 속히 중의원의원선거법을 조선에 시행할 것을 희망함 …… (다음과 같이 건백함) ……

- 취지: 하명(下名) 등은 일한병합의 근본 의의에 임하여 조선으로서 영구히 특수법역으로 통치함이 타당치 아니할 뿐 아니라 시세의 추이에 반하고 인심의 추향을 살펴 조선 민중으로 하여금 국정에 참여케 할 길을 여는 것은 자못 기의(機宜)를 얻는 조치임을 믿어 조선에 중의원의원선거법을 시행할 일을 제국의회에 3회 청원하여 1921년 제44회 제국의회에서 중의원이 채택되리라. 따라서 1922년 1월에 다시 동지 1만인의 연서로써 이 취지를 갖추어 속히 선거법 시행의 건을 결정, 발표할 것을 건백하였으나 지금까지 실현되지 못한 고로 조선 2천만 민중은 국정에 참여하는 권리를 부여받지 못하여 일종의 굴욕과 생활상의 결함을 느끼는 바이라. 중의원은 지난번에 제시한 바와 같이 이

19) 오래 사귄 친구를 뜻함.

미 청원을 채택한지라. 바라건대 정부는 조선의 실정을 통찰하고 아울러 중의원의 의사를 존중하여 하명 등의 원의(願意)를 달성케 할 것을…….

- 신천지부 설치: 1923년 3월 7일에 홍신권 씨 외 80명이 황해도 신천군에 국민협회 지부를 설치하겠다는 신청이 있어 이를 인가하였는데 지부의 임원은 다음과 같더라.

지부장 : 홍신권(洪信權)

총 무 : 유명순(柳炳純), 신산로(申山老), 김택관(金澤寬)

평의원장 : 김제관(金悌寬), 민찬식(閔贊植)

평의원 : 유창구(柳昌龜), 유창주(柳昌周), 김충현(金忠鉉), 김기옥(金基鈺), 강승억(康承億),
최희원(崔熙元), 이장성(李長成), 이종채(李鍾埰), 송성권(宋聖權), 장이선(張利善)

간 사 : 김윤두(金潤斗), 김달화(金達和)

- 구성지부 정기대회: 평북 구성지부에서는 1923년 3월 25일에 정기대회를 개최하였는데 내회한 회원은 80여 명이요 회무를 처리한 후 다음과 같이 임원을 개선하였다. 풍화당에서 개최한 강연회에는 본부로부터 특히 대회에 참석하였던 회장 김명준 씨의 강연이 있었는데 청중은 2백여 명이요 대성황을 이루었더라.

지부장 : 김항련(金恒鍊)

부지부장 : 김재희(金載熙)

총 무 : 이상하(李尙夏), 최응화(崔應和)

평의원 : 차상직(車相稷), 장경진(張景辰), 장용관(張龍官), 장성일(張星日), 박경성(朴庚星),
김낙용(金洛容), 김자옥(金子郁), 김연식(金鍊植), 김형식(金亨湜), 원봉순(元鳳淳),
박문경(朴汶京), 우장숙(禹章淑), 박치오(朴致梧), 차운석(車運錫), 이익서(李益鉏)

간 사 : 김정중(金鼎鍾), 이지흠(李之欽), 박승구(朴承九), 원응모(元應模), 허수겸(許守謙),
장용진(張龍銓), 허현(許賢), 박창구(朴昌龜), 차호순(車浩淳), 허익현(許益賢),
장성철(張星喆), 박치일(朴致一), 최학순(崔學順), 오경범(吳景範), 김재항(金載恒)

상담역 : 김응한(金應漢), 김창락(金昌洛)

〈출전 : 國民協會 소식, 『時事評論』 2권 2호, 1923년 3월 15일〉

4) 국민협회 회계 보고(1925)

1925년 1월 1일부터 1925년 12월 말일까지 국민협회 회계 보고

수입	
- 독지자 기부금	9,600원
- 전년도 이월금	1,337원 16전
총계	10,937원 16전

지출	
- 인건비	2,420원
- 여비	1,830원 60전
- 비품비	100원 82전
- 소모품	600원 10전
- 통신 및 교통비	399원 75전
- 시사평론비	3,213원 34전
- 잡비	459원 93전
- 교제비	895원 20전
총계	10,119원 74전
차감잔고	817원 42전

총무
이동우
이병렬
김환
김석태

<출전 : 國民協會會計報告, 1925년, 『齋藤實文書』, 일본국립국회도서관 한정자료실 소장>

5) 국민협회 정기대회 상황(1927년 2월)

지난 1월 18일 오후 2시 국민협회 제12회 정기대회를 부내(府內) 서린동 명월관 지점에 개최하고 정각에 이르러 회장 신석린 씨의 개회선언과 회무 보고가 있었다. 그 다음에 임원을 개선한 결과 김명준 씨가 회장으로 피선되고, 기타 다음과 같이 총무, 평의원, 고문 및 상담역이 개선된 후에 전 회원의 만장일치로써 별항과 같은 선언결의를 가결하고 6시에 폐회하였다. 폐회한 후 신구(新舊) 회장의 퇴임사와 취임사가 있었는데 그 요령(要領)은 다음과 같다

▪ 개선 임원 명단

회 장 : 김명준(金明濬)

총 무 : 이병렬(李炳烈), 김석태(金錫泰), 조병상(曹秉相), 최두환(崔斗煥)

평의원 : 정규환(鄭圭煥), 권오용(權五鎔), 윤기현(尹冀鉉), 임종면(林鐘冕), 천영기(千英基), 위중기(魏鍾冀), 남태희(南泰熙), 오헌창(吳憲昌), 한문관(韓文寬), 장병두(張秉斗), 장상□(張相□), 김□사(金□沙), 김봉수(金鳳洙), 김석진(金錫晉), 김관□(金寬□), 김창락(金昌洛), 박창진(朴昌鎭), 최정호(崔定浩), 최창현(崔昌鉉), 권중국(權重國), 신태한(申泰韓), 허주(許柱), 최덕(崔惠), 조병렬(趙炳烈), 박기홍(朴基洪), 박□□(朴□□), □중만(□重晩), 김의용(金義用), 조원□(曹元□), 박경□(朴庚□)

고 문 : □준원(□俊源), 신□□(申□□), 김관현(金寬鉉), 정병□(鄭丙□)

상담역 : 이겸제(李謙濟), 이동우(李東雨), 김환(金丸), 한□원(韓□源), 강인우(姜麟祐), 유진명(俞鎭明), 김중환(金重煥), 김홍식(金鴻錫), 김□영(金□永), 서병조(徐丙朝), 이□우(李□宇), 한□□(韓□□), 전덕룡(田德龍), 이명□(李明□), □달환(□達煥), 김□□(金□□), 서병협(徐丙協)

▪ 선언

소요 후 인심이 당□를 일한 때를 맞아 우리의 회가 8대 강령을 만들고 창립한 이래 8개 성상을 열하는 □에 안으로는 동포의 사상 선도 고취하고 밖으로는 민족의 권리 신장에 힘 쓸 것

▪ 결의

- 일시동인(一視同仁)의 성조(聖詔)에 칙(則)하여 참정권 획득 시기의 촉진을 기함
- 사상 선도의 방침을 확립하여 국가적 정신의 절멸(絶滅)을 기함
- 흥업 식산의 정신과 근면 질실(勤勉質實)의 기풍을 함양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의 개량 촉진을 기함

▪ 구(舊)회장 신석린 씨의 퇴임예사(退任禮辭)

불초의 몸으로 본 회의 가장 중요한 회장에 취임하여 과거 1년간 비록 직무(役務)상의 대과(大過)는 없었으나 적극적으로 하등의 실적을 거두지 못하였음은 실로 참괴(慙愧)²⁰⁾를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아직 본 회의 미력한 현상에 있으나 본래의 포부한 사명은 극히 중대합니다. 다시 말하면 조선 전 주민의 소장휴멸(消長休滅)에 관한 바 국정에 참여할 헌법상의 권리획득 문제임은 여러분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이거니와, 본 회 창립의 유일한 동기도 여기 있었고 본 회 제일세(第一世)의 회장이신 고(故) 민원식 씨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피의 희생을 제공한 바이니 물환성이(物換星移)²¹⁾할수록 감개무량한 점이 많습니다.

그 당시 본 회가 제국의회에 제출한바 중의원의원선거법을 조선에 시행함을 희망한다는 청원이 채택된 이래로, 매년 중앙정부에 건백하여 그 시행기일의 명시를 요구한 바가 수차례에 이르나 불행히 우리의 성의가 창달(暢達)되지 못하였음은 조선 민족의 전도(前途)에 무한한 유감을 끼쳤다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후까지 본래의 사명을 위하여 소기의 목적을 관철치 아니치 못할지니 이 의미에서 나는 본 회 회장의 소임을 사임하는 동시에, 회원 제위와 및 신임간부 일동에게 희망하는 바는 위와 같은 대사명과 대목적은 포부한 본 회로서 적당한 운동방법을 강구치 아니치 못할지니 다시 말하면 정치적 연구와 정치적 훈련의 함양이 무엇보다도 선행할 문제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본 회의는 정치의 조사연구기관을 충실히 하여 조선 민도에 적합한 정치제도와 정치조직을 조사, 연구하여 합리적 내지 합법적으로 운동방법을 진행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개공(剏功)한 첩경으로 생각하는 바이오. 따라서 본 회의는 일반 민중의 정치적 훈련을 위하여 지방자치의 본의와 헌법정치의 지식을 고취(鼓吹), 선전(宣傳)함에 노력하면서 한편으로는 민도의 향상

20) 부끄러워하며 괴로워함.

21) 사물은 바뀌고 세월은 흘러감을 뜻함.

을 도모하여 제국의회와 중앙정부에 대하여 목적을 관철할 것을 중심으로 희망해 마지 않습니다.

회장의 소임을 사임함에 있어 과거 1년간 여러분의 후의(厚誼)에 감사하는 동시에 한 마디로써 참회를 술하여 퇴임사에 대신합니다.

▪ (제목 누락)²²⁾

□으로써 본회 회장의 증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광영을 느끼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염려되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나는 본래로 포류(浦柳)의 질(質)을 가졌고, 최근에 이르러 더욱 건강이 약해져 다사다단한 본회의 극무(劇務)²³⁾를 과연 감당할는지 스스로 공구(恐懼)²⁴⁾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나는 본회의 창립 당시부터 발기인의 일원으로 본회를 위하여 힘이 있는 데까지 성심을 다하여 왔으며, 또 일찍이 회장의 임무를 수행하였던 경험에 비추어 이번에 다시 회장으로 선임되었기에 한두 개의 희망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개 무슨 단체를 막론하고 그 단체의 공동목적을 달성하고자 함에는 회원이 일치단결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은 이제 여러 말할 필요가 없거니와 중대 유일한 사명을 가진 우리 회로서는 더욱 이러한 감념(感念)이 깊습니다. 그뿐 아니라 회원의 일치단결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회원으로부터 신임을 받은 간부 일동은 실무 진행에 임(臨)하여서는 연대협력(連帶協力)하여 일을 맡지 아니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회의주의(主義)를 피력함에 활달한 정신이 필요하며, 우리 회의 소신을 단행함에 용감한 기력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의논(議論)시대가 아니요 무엇이든지 실행할 시대이니, 우리 이상(理想) 목적인 본회의 주의강령을 시대에 맞게 해석하여 가장 급선무로 승인하는 사항은 전심(專心)으로써 그 관행에 노력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번 대회석상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선언 및 의결사항에 의존(依遵)하여 자금(自今)으로 그 소신을 지킬 것…….

(하략)

〈출전 : 國民協會定期大會狀況, 『時事評論』 342호, 1927년 2월〉

22) 신임회장 김명준의 취임사인 듯함.

23) 매우 바쁘고 힘든 사무를 뜻함.

24) 몹시 두려움을 뜻함.

6) 국민협회 회칙(1928년 5월)

1928년 1월 18일 제13회 정기대회에서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본회는 국민협회라 칭하고 본부를 경성에 두며 각지에 지부를 둔다.

제2조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1인 간사 약간 인
총무 4인 평의원 50인

제3조 회장총무 및 평의원은 대회에서 이를 선거하되 각 임기는 2개년으로 함. 단 간사는 회장이 이를 임면함.

제4조 회장은 회무를 총리(總理)²⁵⁾하며 총무는 회무를 장리(掌理)²⁶⁾하고 간사는 회무에 종사함.

제5조 회장이 사고(事故) 시에는 총무가 이를 대리함.

제6조 평의원은 중요사항을 심의함.

제7조 본회에 서무부, 조사부, 선전부를 둔다. 부장은 총무로써 이에 총당함,

제8조 본회에 상담역을 둔다. 고문 및 상담역은 평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회장이 이를 추천함.

제9조 지부의 설치 및 규약은 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제10조 본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 2인 이상의 추천과 입회금 1원을 요함.

제11조 본회로부터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본부 및 지부에 통고해야 함.

제12조 회원으로서 본회의 체면을 오손(汚損)하는 행위가 있음으로 인정된 자는 이를 제명함.

제13조 본회의 경비는 회비 및 기부금으로써 이를 지번(支辨)²⁷⁾함. 회비는 연 1원으로 함.

25) 전체를 모두 관리함.

26) 일을 맡아 처리함.

27) 지출(支出), 지拂(支拂)과 같은 뜻으로 쓰임.

제2장 대회 및 평의원회

제14조 대회는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를 소집함.

제15조 대회는 매년 1회 열고 회무의 대강(大綱)을 의정(議定)함. 평의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때는 임시대회를 열 수 있음.

제16조 대회의 의장은 회장이 이를 맡음. 단 의결은 출석원의 과반수에 의함.

제17조 평의원회는 매년 4회 개최하고 본회의 중요사항을 의결함. 단 긴급사항이 있는 때는 임시회를 열 수 있음.

제18조 평의원회는 평의원 반수 이상 출석치 아니하면 이를 열 수 없음. 평의원회의 의장은 매년 제1회 평의원회에서 이를 선정함.

부칙

본 칙은 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변경할 수 없음. 회무에 관한 세칙은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를 정함.

〈출전 : 國民協會會則, 『時事評論』 357호, 1928년 5월〉

7) 국민협회 정기대회 상황(1929년 2월)

국민협회 제14회 정기대회는 지난 1월 18일 오전 11시 경성 장곡천정 상업회의소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는데, 출석회원은 약 70명, 회장 김명준 씨가 의장석에 나와 개회를 선언하고, 출석회원을 점명(點名)하고, 전 회(前回) 회록(會錄)을 보고하였다. 192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관한 의사가 끝나고 회장 이하 총무의 총사직이 있었는데, 임원 개선에 앞서 회칙 제2조 중 총무 4인을 7인으로 하는 개정안이 통과됨에 바로 임원 개선을 행하고, 이어서 1929년도 예산안 선언 결의 등을 토의, 가결하고 오후 4시 30분 폐회하였다. 이어 회원 임원 및 내빈 일동의 만찬회를 경성식당에 개최하였는데 주객이 즐겁게 마치고 7시경에 산회하였다. 개선 임원 및 선언, 결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선 임원 명단

회 장 : 김명준(金明濬)

총 무 : 이병렬(李炳烈), 이동우(李東雨), 김환(金丸), 김석태(金錫泰), 최덕(崔憲), 허주(許柱), 박인중(朴麟鍾)

평의원 실격자 : 방규환(方奎煥), 이규상(李圭尙), 반창환(潘昌煥), 고희두(高羲斗), 김창락(金昌洛), 이덕기(李德基)

평의원 : 심재덕(沈載德), 강재용(姜在鎔), 이계호(李啓浩), 박성주(朴性宙), 차종호(車宗鎬), 김찬정(金贊禎), 이종식(李種植), 김종원(金鍾元)

선언

우리 모임이 신일본주의의 하에서 8대 강령을 제정하고 만세소요(萬歲騷擾)²⁸⁾ 직후에 분연히 쫓겨간 것은 시대의 진운에 순응하고 세계의 대국에 착안하여 일본과 조선의 차별을 철폐하고 제도의 합일을 이루어 일한병합의 대정신에 기초한 상근일가(桑椹一家)의 열매를 거두고 양 민족의 합체로써 형성한 국가의 비기(丕基)²⁹⁾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병합 후 10년간 신정(新政)의 정신이 오직 산업을 진흥하여 생활의 안고(安固)를 도모함에 있음을 살피지 못하고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고 조선의 민중은 식민지의 토인(土人)³⁰⁾이 되었다는 오해를 품은 대중에게 반성을 촉구하고 자각을 환기하여 자포자기적(自爆自棄的) 경거망동이 나온 것을 타이르고, 제국신민으로서의 합리적 요구와 합법적 운동에 의하여 민권의 신장을 도모하여 참정권 행사의 시기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그 전제로써 산업의 개발과 교육의 보급을 도모하여, 먼저 생활의 안정과 문화의 향상을 기하고 지방자치의 관념을 함양하여 입헌국민의 자격을 완비함에 노력함이 우리 회의 사명이다. 또한 이것은 명치(明治) 천황의 병합 조서와 대정(大正) 천황의 관제 개혁의 조서를 받들어 문화적 제도의 혁신으로 조선을 유도(誘導), 제시(提撕)³¹⁾하여 그 행복 이익의 증진을 계획하고 문화의 발달과 민력의 충실에 응하여 정치상, 사회상의 대우를 일본인과 동일케 하는 궁극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이토(齋

28) 3·1운동을 뜻함.

29) 왕의 큰 기업(基業)을 뜻함.

30) 어떤 지방에 대대로 토착하여 사는 주민을 뜻함.

31) 기운을 내어 펼쳐 일어남.

藤) 총독의 문화정치의 시설 방침에 합치한다. 뿐만 아니라 장래 시기를 보아 지방자치 제도를 실시하여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일반의 복리를 증진함을 기한다는 성명과 합치되어 관민이 서로 흥금을 터놓고 협력일치로 조선의 문화를 향상케 하여 문명적 정치의 기초를 확립함으로써 성명에 봉답(奉答)하고자 하는 사이토 총독의 희망에 부응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회는 사이토 총독 유시(諭示)와 성명을 신뢰하고 그 시정 방침을 익찬(翼贊)³²⁾하여 안으로는 사상 선도에 힘쓰고 밖으로는 민권 신장을 운동하여 총독정치의 진의를 선전하고 일부 민중의 오해를 불식함에 노력함이 □치 아니하였다. 이에 민심이 점차 상궤(常軌)³³⁾로 회복하여 우리 회의주의와 주장에 공명하는 자가 일가월증(日加月增)하는 것은 이를 증명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소요 후 민심이 매우 흥분된 여파는 세계 사조의 격변과 함께 다소 악화의 경향이 없지 아니하여 기교(奇矯) 과격의 사상이 청년계를 풍미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유감이 아니라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문화정치를 오해한 것을 반영한 것에 지나지 못하고 하등의 근거와 계통이 있는 것이 아니니 상당한 방침을 강구하여 선도치 아니하면 안 될 것이다. 자유라는 것은 방헌(邦憲)³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는 것이요 국가와 사회의 해독을 끼치는 것까지 용인하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회는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남용하고 악용하여 반국가적 주의, 사상을 고취하고 선전함이 옳지 않을 뿐 아니라 반성하고 회오(悔悟)치 아니하면 반드시 반동정치를 초래할 일이 있을 것을 경고함이 한두 번에 그치지 아니하거니와 이 점에 대하여는 우리회가 더한층 노력하여 일반 민중의 자각을 촉구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이다.

지방자치의 제도를 실시하지 못하고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를 획득치 못하면 식민지의 토인과 다를 것이 없음은 여러 말이 필요하지 않다. 우리 조선 민중에게 있어 하루라도 속히 실시되도록 할 것은 지방자치요, 일각이라도 속히 획득하여야 할 것은 참정권이다. 그 다음으로 우리 조선 민중으로 하여금 기교(奇矯)한 사상에 침염(浸染)되고 공허한 운동에 분주하여 민족 전체의 전도를 그르치는 거동에 나서지 말고 합리적, 합법적으로 민권의 신장과 자유의 획득에 협심협력하여 문화정치의 열매를 거두게 함이 우리회의 본연한 사명으로 확신하는 바이다. 이에 우리회는 제14회 정기대회를 여는 것에 임하여 2천만 민중과 같이 제국의 신민(臣民)인 자각하에서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를 촉진하고

32) 주로 제왕의 정치를 잘 도와서 인도함을 뜻함.

33) 떳떳하고 바른 길을 뜻함.

34) 국법을 뜻함.

참정권 행사의 시기를 신속케 할 뿐 아니라 교육의 보급, 산업의 개발을 도모하여 정치상, 사회상에 일본인과 동일한 대우를 누리기 위하여 자력, 독행(篤行)으로 용왕매진(勇往邁進)³⁵⁾하고자 함을 천하에 선언한다.

결의

- 온건한 사상과 질실(質實)한 기풍을 함양, 육성하여 입헌국민 된 자각을 환기함에 노력할 것.
- 조선 주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도록 중앙정부에 건백하고 제국의회에 청원하여 국민 된 권리를 획득함을 기할 것.
-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를 촉진하도록 운동할 것.
- 우리의 실생활상 필수한 제 사항에 대하여 널리 실제적 지도유액(指導誘掖)³⁶⁾을 할 것.

〈출전 : 國民協會定期大會狀況 『時事評論』 366호, 1929년 2월〉

35) 거리낌 없이 힘차고 용감하게 나아감.

36) 유액(誘掖)은 남을 이끌어 도와줌을 뜻함.

8) 『국민협회운동사』(1931)

- 목차 -

1. 설립 동기 및 연혁
 2. 신일본주의의 선명
 3. 본 회의 취지 및 강령
 4. 참정권요구운동
 - (1) 청원운동
 - (2) 건백(建白)운동
 - (3) 진정운동
 5. 보선(普選)실시 축하회
 6. 척식성 조선제외운동
 7. 본회 정기대회 선언 결의 집록
 8. 고 민원식(閔元植)과 국민협회
 9. 고 정암(正菴) 선생 약전
- (부)
- 회규
- 현 임원 일람표

국민협회운동사

1. 설립 동기 및 연혁

1919년 3월 1일 전조선을 진동시킨 소위 만세소요가 발발한 이후, 많은 조선인은 민족 자결주의에 심취하여 세계의 대세를 깨닫지 못하고, 마치 조선독립의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반국가적 행동을 일삼는 자가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시국은 더욱 혼란 분규하여 정말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고 민원식(閔元植) 군은 우선 일반 조선인의 오해를 풀고 국민으로서의 자각을 환기시킴으로써 사상을 선도하고 시국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민간단체의 노력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확신하고, 이에 동지와 의논하여 1918

년 7월 협성구락부를 조직하고 언론을 통해 조선독립의 불가능함을 통론(痛論)하면서 신일본주의를 선언하였다. 선언의 내용은 일본은 일본 민족만의 소국가로부터 일약 조선 민족도 포용하여 양 민족 공유의 신일본을 형성했기 때문에 조선 민족은 신일본제국의 명예로운 신민으로서 일본인과 똑같은 국민의 권리를 신장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듬해 1월에 이르러 협성구락부의 조직을 변경하여 범위를 확장하고 이름을 국민협회로 개칭하였다. 신일본주의 실현의 첫걸음으로 조선 민중에게 참정권을 부여할 취지의 청원을 처음으로 제42제국의회에 제출하였다. 이는 요컨대 한편으로 독립운동을 일으켜 반국가적 사상이 전선에 물든 상황에서 막연한 내선융화론을 주창하는 것보다 민중을 향해 선명한 기치를 세우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여 그들을 지도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민심은 원래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사실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즉 본회는 참정권 요구를 내걸어 이를 조선에서의 민중운동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방향을 정한 것이다.

고 민원식 군이 본회의 이러한 운동을 위해 거만(巨萬)의 사재를 들여 1년여에 걸쳐 분투 매진한 결과, 그 취지에 찬동하는 자가 날로 증가하여 회세(會勢)의 발전을 보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1921년 2월 고 민회장은 제3회 참정권 요구청원을 제44회 제국의회에 제출하고 그 수속을 마치자마자 공교롭게도 같은 달 16일 도쿄역 호텔에서 흥한의 칼에 찔려 최후를 맞이하였다.

중심인물을 잃은 본회는 협회를 통제할 책임자를 찾지 못하여 통일되지 않고, 더욱이 자금난에 허덕여 기관지인 시사신문은 결국 휴간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선후책을 강구하고자 여러 번에 걸쳐 임시대회를 소집하였지만, 유희에 유희를 거쳐 결국 해산할 수밖에 없는 곤란한 지경에 빠졌다. 그러다가 당시 발기인 수명과 협회를 아끼는 회원 등의 노력에 의해 1921년 4월 10일 임시대회를 개최하여 부회장 김명준(金明濬) 군을 회장으로 추대하고 일부 야심가를 탈회시킨 결과, 본회는 새로운 진용을 정비하고 결속을 강화함으로써 비로소 세력을 만회하기에 이르렀다.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과 기복이 있었지만, 불퇴전의 노력을 계속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이하 본회의 내용 일반과 운동의 경과 개략을 서술하겠다.

2. 신일본주의의 선명(원문)

우리 조선의 최근 사정에 실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식자(識者)는 세계적 사조의 영향을 받고 있고, 인심은 완미(頑迷)하여 세태를 분별할 수 없다. 두 견해를 긍정할지 부정할지 모르나, 우주의 모든 삼라만상은 인간의 심리에 작용되지 않는 것이 없다. 민심 동요의 원인은 원래부터 복잡하지만, 민심을 바로잡는 방도는 정리(情理)를 다하여 이해하고 타일러 각성을 촉구하는 이외에 방법이 없다. 이것이 불초하지만 하늘의 명시(冥示)에 따라 신일본주의를 제창하는 까닭이다.

1918년 10월
민원식(閔元植)

신일본주의

우리는 생활의 안정을 요구한다. 이는 단순히 우리 개인의 행복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다. 국가 사회의 강녕을 지키고 융창(隆昌)을 꾀하는데 가장 필요한 조건은 개인 생활의 안정을 확보하는 데에 있다.

또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생활을 확충시켜야 한다. 인류의 본능은 진화를 욕구한다. 현대 문명의 원천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하지만 개인 생활의 안정은 여차하면 인심을 이완(弛緩)시켜 잡념을 생기게 만든다. 특히 인류가 천하에 누리는 본능, 즉 왕성한 진화욕(進化慾)조차 감퇴시켜 생활을 소공(疎空)하게 만들기도 한다. 우리 반도의 최근 모습을 보면 인심의 황탕(荒蕩)이 실로 우려할 만하다. 점점 생활의 안정을 얻어 인심이 이완되고 망상에 빠지는 간극(間隙)이 생겨 진화욕의 사로(邪路)에 빠지고 있다. 우리는 우리 동포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그 존재를 빛나게 만들기 위해 개인 생활에 충실하고 인심을 긴장시켜 진화욕을 정도(正道)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생활의 충실은 각 개인의 자각에서 출발하고, 자각에서 진보하고 자각에서 성취해야 한다. 아무런 준비 없이는 아무런 성산(成算)이 없다. 조선독립운동이 표방하는 '독립'이 반도민의 이해를 초월하여 그 자체가 존귀하다고 말하는 것은 착각이다. 이는 마치 미개인이 우상을 숭배하여 행복할 수 있다는 것과도 같다. 미신과도 같은 독립은 곧 조선민족의 광영이다. 이를 위해 우리 반도의 동포는 그 어떠한 노력과 심대한 희생도 불사할 수밖에 없다. 개인생활을 완전히 하고 집단생활과 협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

가가 최고 목적으로 삼는 현대 사상과의 거리가 아주 멀어져 필경 시대에 뒤떨어지고 무자각을 드러내는 망동에 불과하다. 인신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우리 동포는 바른 이치로 각성하여 망상을 없애고, 공론을 배격하여 각자 생활을 충실히 향상시켜 사회의 진운(進運)에 밀착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독립국가의 가치를 경시하지 않는다. 인류의 복지는 각각의 국가에 의해 보장받고 있다.

우리 조선 민족은 실로 일본제국의 신민으로서 생활의 안정을 보장받고 있다. 정부의 조선통치방침을 보면 우리 조선 민족의 실력을 기르고 문화를 발전시키려는 의사가 특히 절실하다. 다만 민권이 아직 신장되지 않아 우리 동포의 지망(志望)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조선 4천 년의 역사를 볼 때 신정(新政) 불과 10년 만에 민권을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과분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요컨대 우리 동포는 현재 독립국의 국민이라는 사실에 대해 깊이 생각할 이유가 없다. 만약 구한국이 오늘날 존속한다면, 충성을 다하여 국운의 융창과 국위의 선양을 도모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병합은 이미 과거의 사실이 되었다. 어떠한 이론상의 설명도 오늘날 이를 부인할 수 없다.

“독립운동은 조선 민족이 정치적 또는 사회적 생활개선의 요구를 충족시킬 유일 내지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 그들은 현재 안주하는 위치에서 진보 발달을 위해 취할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노력을 피하고 있다. 허영과 자아가 긍정되는 경지에 대한 동경일 뿐이다”고 말하는 공평한 열강의 비판은 그 진상을 잘 나타내고 있다. 독립운동은 도저히 행복과 광영을 우리 동포에게 가져다주는 길이 아니다.

병합으로 대일본제국은 일선 양 민족 공동의 국가가 되었다. 이 사실은 단순히 정치상의 사건으로 바라볼 일이 아니다. 일선 양 민족의 합체라고 칭할 수 있다. 일한병합의 기회를 이룬 것은 양국 국력의 차이와 정치상의 이유에 있다. 따라서 양 민족의 합체와 동시에 양자에 대한 국가제도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그것은 합체의 근본조건이 아니라 정치상 가설적 장애에 대한 잠정적인 제도이다. 조선 민족이 정당한 노력을 통해 민권을 신장하는 것은 국가의 본의에 맞는 일이다. 지금 조선 민족이 불평을 품을 이유는 없다. 실로 물질적 문명이 발달한 현대의 여러 사정 가운데 교통이 편리하면 경제관계가 밀착된다는 사실로 볼 때, 쓰시마해협을 사이에 두고 일선 양국이 대립하여 동종 동문(同種同文)의 일선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명칭을 고수하여 하나는 야마토(大和) 민족이라고 칭하고, 또 하나는 조선 민족이라고 부르며 서로 국가의 이해 때문에 항쟁함으로써 양 민족의 화합을 통해 당연히 누려야 할 복지를 말살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 필경 양 민족의 합체는 지상에 내린 하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하늘의 뜻을

준수하여 민족의 번영을 증진시켜야 한다.

국가에 충성을 권장하는 것은 즉 대의(大義)에 순응하는 것이다. 조선 민족이 역사를 과장하여 스스로 높은 긍지를 품고 조선의 독립을 크게 선전하여 동포의 우려를 생각하지 않는 것은 소의(小義)에 빠져 대의를 어그러뜨리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일본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백성이 국토에 넘쳐흘러 그 증가 비율은 거의 세계의 으뜸으로 장차 강성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현재 아직 6천만을 넘지 않는다. 국민의 활기가 아무리 왕성하다지만 옆 나라 중국의 4억에 비하면 불과 1할 2분에 지나지 않는다. 국가의 부강은 강토의 광협 내지는 인구의 다소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제국이 반도의 땅과 더불어 1천 7백만의 충성을 함께 얻을 수 있는가의 여부가 국가의 위용에 큰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이를 얻었을 때, 동양의 맹주로서의 실력 있는 제국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그 위엄이 더욱 강화되고 특히 국시(國是)의 신장 또한 상당할 것이다. 양 민족의 합체와 동화공존은 정말로 하늘의 뜻이고 시세에 순응하는 것이다. 일선 민족이 도리에 따라 일한병합 즉 양 민족의 합체라는 사실을 존중함으로써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취지를 신일본주의라고 부르고 다음과 같은 주장을 분명히 밝힌다. 조선 민족은 대일본제국의 신민이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합법적 노력으로 민권의 신장을 도모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반국가적 사상을 품거나 혹은 조선의 독립을 계획하는 것은 대의를 어그러뜨리는 명분에 반할 뿐만 아니라, 1천 7백만의 복지를 저해하는 폭거일 뿐이다. 조선 민족은 국가에 대해 충성을 맹세하고 정당한 노력을 통해 생활을 확충하여 문명국민으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야마토 민족은 조선 민족의 의사와 감정을 존중하여 제국의 신민인 조선 민족의 향상을 위한 정당한 제반 노력에 항상 공정한 태도를 지니는 것이 지당하다고 믿는다.

3. 국민협회의 취지 및 강령

취지

지금 세계의 대세는 예전의 대전을 거쳐 현저히 진전하였다. 강화조약이 새로이 성립되고 국제연맹의 기초가 확립되어 바야흐로 평화의 시기에 들어섰다. 하지만 열국의 경쟁은 지금부터 더욱 격심해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생활문제, 노사문제, 사상문제가 발생

하고 이에 더하여 보통선거의 기운이 점차 뜨거워져 사회개조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선전되고 있다. 국가의 앞길을 우려하고 개인의 행복을 바라는 자는 하루라도 편히 있을 수 없다. 이런 시기에 우리 조선만 태평스럽게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다면, 이는 온 세계의 형세를 전혀 모르는 실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최근 사태에 깊이 느끼는 바가 있어 이를 우려하는 사람들과 함께 들고 일어나 시국을 구하고 동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국민협회를 조직하였다. 많은 사람들의 찬동을 얻어 실력 있는 단체가 되고자 일정한 주의(主義) 밑에 활동하고 강령을 정해 착착 그 실행을 도모하고자 한다.

뒤집어 생각해보면 일한 양국의 병립은 과거의 사실이다. 지금은 합체하여 하나의 나라를 이루었다. 일본은 이미 과거의 일본이 아니라, 조선의 토지와 인민을 포유(包有)한 신일본이 되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일본 민족만의 일본이 아니라, 일선 양 민족의 일본이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과 자각에 입각하여 조선과 일본 사이에 존재하는 구거(溝渠)를 철거하여 혼연일체가 되고, 견고한 국가를 형성하여 일선 민족 공존의 대의를 완수하고자 한다.

또 우리는 조선과 일본의 구별을 조장하는 현재의 제도에 만족하지 않는다. 합일을 도모하는 일은 실제로는 우리가 산업을 장려하고 교육을 보급시켜 생활의 안정과 인지(人智)의 개발을 도모하여 입헌국민으로서의 자각을 환기시키는 것이다. 또 우리는 자치의 관념을 함양하여 참정권의 행사와 지방제도의 개혁을 촉진하고, 나아가 노자의 조화 및 부담의 균등에 대한 계책을 세워, 사상의 선도와 사회의 개량 등 모두 시세에 순응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를 통해 조선 민족의 문화를 향상시키고 행복을 증진시켜 국력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감히 세상에 고한다.

주의

신일본주의

강령

1. 우리 동지는 온 세계의 대국(大局)과 시대의 추세를 비추어보아 국민일치의 정신을 발양(發揚)하여 더욱 국가의 기초를 견고히 한다.
2. 우리 동지는 국민의 자각을 호소하여 이를 선도하고, 국가의 강녕과 각 개인의 행복을 도모한다.

3. 우리 동지는 입헌사상의 발달과 민권의 신장을 도모하여 참정권 행사의 시기를 촉진시킨다.
4. 우리 동지는 지방자치의 실시를 촉진시키기 위해 인민에게 자치의 정신을 함양시킨다.
5. 우리 동지는 교육의 발달과 보급을 도모하여 교육기관의 완비를 기한다.
6. 우리 동지는 산업의 진흥과 부원의 개발을 도모하여 민력을 충실케 한다.
7. 우리 동지는 노자의 조화를 도모하여 상호 이익을 증진시킨다.
8. 우리 동지는 납세 의무를 이행함과 동시에 국민의 부담을 공평히 하도록 한다.

4. 참정권 요구운동

(1) 청원운동

제1회 청원서(제42회 제국의회)

(청원서 내용 생략)³⁷⁾

1920년 1월

국민협회 회장 민원식(閔元植)

비고) 이 결과는 중의원 분과회에서 정부에 참고 송부할 것을 결정했을 뿐, 본회의 상정에 앞서 중의원이 해산되었기 때문에 결국 채택되지 못하였다.

37) 이 책의 60~62쪽의 내용과 동일하여 생략함.

제2회 청원서(제43회 제국의회)

주지

중의원의원선거법을 조선에 시행하기를 바란다.

이유

우리는 조선의 현상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제42회 의회 개회에 즈음하여 의사를 피력하고 청원했지만 때마침 해산으로 인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이번에 다시 청원하기에 이르렀다.

병합 이후 정부는 조선의 개발에 노력하여 그 결과는 현저하였다. 조선인 또한 당로(當路)의 성의와 신정(新政)의 혜택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작년 봄 소요가 일어난 후 민심안정이 깨뜨려져 조선의 전도는 아주 우려할 만할 사태에 이르렀다. 지금 근본적 해결책을 취하지 않으면 아마도 조선은 영원히 난치(難治)의 지방이 될지도 모른다. 우리는 미력하나마 동지와 함께 현하 민심을 수습하여 내선일가의 기초를 확립하는 데 밤낮으로 대책에 부심하였다.

생각건대 일한 양국의 합일은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귀결로 일반 조선인도 양해하고 있는 바이다. 하지만 내심 일본의 치하에 있다는 것을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아 자칫하면 반국가적 언동을 일부러 일삼는 자가 있다. 특히 나이 어린 학생 중에 이에 뇌동하는 자가 있다는 것은 실로 태평한 세상의 불상사이다. 이는 필경 일본 국민이라는 자각이 없기 때문이다. 즉 일본은 조선을 멸망시켰고, 조선인은 단지 망국의 유신(遺臣)으로서 그 통치를 받을 뿐이라는 감상이 오래도록 조선인의 뇌리에 남아있다. 조선통치의 장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이를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는다면 어떠한 선정일지라도 그 효과는 아마 없을 것이다. 우리는 조선통치의 근본 방책은 조선인으로 하여금 일본 국민이라는 자각을 환기시키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통감한다. 현재의 민심을 수습할 수 있는 방책 또한 바로 이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뒤돌아 생각해보면 국민이라는 자각은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비로소 생겨난다. 그런데 조선인은 국민의 중요 권리인 참정권이 없다. 즉 제국의회가 있고 일본에 거주하는 인민은 선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원을 선출하여 국정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에서는 선거법이 시행되지 않고 의원을 선출할 수 없다. 조선에 관한 사항일지라도 모두 일본 선출의 의원에 의해 결정된다. 다른 말로 한다면 일본 제국의 정치는 일본인의 정치로 조선인은 전혀 참가할 수 없다. 우리는 조선인이 국민

이라는 자각을 갖지 못하는 원인이 바로 이 점에 있다고 생각한다. 참정권 부여가 가장 급무임과 동시에 하루라도 빨리 부여할 문제이다.

혹자는 조선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한다. 하지만 참정권은 국민이 당연히 향유할 권리로 그 요건은 국법이 정하는 바이다. 이미 조선은 일본의 영토이고 조선인은 일본제국의 신민이다. 이를 제외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문제는 그 실행의 여부와 이폐(利弊)가 어디에 있는가이다. 우리는 조선인 가운데 의원에 적합한 자가 없다고 믿지 않는다. 또 선거를 실시하면 곤란한 점이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전후 세계는 인류의 정치적 각성을 촉구하고, 일반 사조는 현저히 진전하였다. 참정권의 요망은 단순히 민권의 신장만을 말하지 않는다. 민중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시키는 것은 오히려 인민으로 하여금 정치적 책임을 자각시켜 국가 관념을 견고히 만드는 길이다. 요로에서도 이미 조선에서의 지방자치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 준비로 지방자문기관을 설립하였다. 우리는 이 시기에 정부의 방침을 결정하여 조선에 선거법을 시행할 것을 명시하기 바란다. 조선 2천만 민중으로 하여금 의혹을 없애고 국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확신하에 일본 국민이라는 자각을 환기시켜 진충보국(盡忠報國)으로 신민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기를 절실히 바란다.

이를 청원한다.

1920년 7월

국민협회 회장 민원식(閔元植)

비고) 본 제국의회는 원래부터 임시로 열려 회기가 짧았기 때문에 채택에 이르지 못하고 폐회되었다.

제3회 청원서(제44회 제국의회)

주지

중의원의원선거법을 조선에 시행하기를 바란다.

이유

우리 동지는 지난 제42의회 및 제43의회에 참정권 요구를 청원했지만 결국 채택되지 못하였다. 이에 세 번째로 청원하여 2천만 민중의 의사를 밝히려 한다.

병합 이후 불과 10년에 지나지 않아 동화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인심 또한 여전히 불안한 상태에 있을 때에 갑작스럽게 참정권을 요구하며 혹 아직 시기가 아니라고 논의가 있다. 하지만 참정권은 제국 헌법이 인정하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다. 조선이 일본의 영토가 되었고 조선이 일본 신민이 된 이상, 이의 향유를 요구하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로 조금도 기이한 일이 아니다. 우리는 결코 일을 벌이기 좋아하거나 사사로운 개인적인 욕심으로 청원하려는 것이 아니다. 지금 조선의 현상은 혹은 독립을 부르짖거나 혹은 자치를 주장하여 표면상 아주 혼돈스럽지만, 이는 원래부터 다수 조선인의 진의가 아니다. 아무도 마음속으로부터 독립의 가능성을 믿는 자는 없다. 자치와 같은 것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단지 참정권의 요구만이 모든 조선인이 열망하는 목소리로 우리 청원자만의 희망은 아니다. 2천만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이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조선에 대한 정부의 시설에 불만을 품지 않는다. 신정(新政)의 효과로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뀐 것을 조선인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이다. 하지만 망국의 감정은 하루아침에 소멸되기 어렵고, 하물며 이해(利害)의 판단에 의해서만 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조선통치의 장애는 실제로 이 점에 있다. 따라서 이를 완화시키지 않는다면 설령 최선의 정치를 실시하더라도 그다지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여 지방자치의 실시와 참정권 부여라는 2대 정책을 얻었다.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당국 또한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이를 위한 준비로 자문기관을 설치하고 지방자치로 나아갈 단계에 접어들었다. 우리는 지방자치의 즉각 시행을 요망하지만, 그 서광을 인정하고 잠시 요로의 시책에 일임하여 시기의 도래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참정권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정말 선명하지 않다. 먼 장래에 혹시 이를 부여할 시기가 오겠지만, 조선인은 가까운 시기에 실현될 가망이 전혀 없어 조선인은 이를 가장 불안하게 느끼는 바이다. 병합을 후회하는 마음은 바로 여기에서 배태된다.

생각건대 나라의 흥망은 대세를 따르는 것에 귀결된다. 우리는 지금 병합 사실을 운운하는 것이 이익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새로운 인민으로서 재래의 인민과 동등하게 국정에 참여함으로써 국민된 권능을 행사하여 그 본분을 다하고 싶을 뿐이다. 그런데 민도의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영구히 식민지로서 특정한 제도를 실시하고 다른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조선인으로서 참을 수 없는 바이고 또한 정부를 위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바이다. 우리는 굳이 많은 말을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조선인은 일본제국의 신민이 되었지만 국정에 참여할 수 없다. 아직 국민으로서의 모든 자격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단지 그 자격을 획득하려는 것뿐이다. 조선의 현재와 장래를 생각하더라도 지금 정부는 방침을 제시하여 조선인의 전도에 광명을 주는 것이 오히려 대책일 것이다. 또

이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다시 아무런 말도 없이 사리를 다해 열성을 다할 것이다. 부디 이 청원이 채택되어 뜻을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상을 청원합니다.

1921년 2월

국민협회 회장 민원식(閔元植) 외 약 3천 명 연서

비고) 민원식(閔元植) 씨는 청원서 제출 수속을 마치고 채택운동을 개시했을 때, 불행하게도 흉한의 칼을 맞았다. 중의원에서는 민 씨의 흉보를 접하고 동정을 나타내 만장일치로 청원을 채택하였다.

(2) 건백운동

중의원에서 참정권 청원을 채택한 것은 조선인의 국정참여에 일대 광명을 비추었다. 하지만, 아직 그 실시 시기에 관한 아무런 성명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하여 실시 촉진에 노력하였다. 1922년 이후는 당시 내각에 대해 건백운동을 개시하였다.

제1회 건백서(다카하 고레키요(高橋是清) 내각)

우리는 1920년 1월 10일 동지 백여 명의 연서로 조선에서 중의원의원선거법을 시행하기를 바라는 취지의 청원을 중의원에 제출하였다. 분과회에서는 참고 송부를 결정했지만 의회가 해산되었다. 같은 해 6월의 의회에는 6백여 명의 연서로 다시 청원을 귀족원과 중의원에 제출하였지만, 채택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의회는 폐회되었다. 1921년 2월에는 3천여 명의 연서로 세 번째 청원을 귀족원과 중의원에 제출하여 드디어 중의원에서 채택되었다. 이 청원의 채택은 제국의회 각 지방으로부터 선출한 의원으로 조직된 일원(一院)에서 조선으로부터 의원을 선출할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조선의 전도에 일대광명을 비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적(籍)을 조선에 둔 1,800만 동포는 이를 통해 비로소 국정에 참여할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는 의원(議院)의 의사 표명에 그친 것으로 그 실현은 모두 정부의 의사에 달려있다. 정부 또한 조속히 조선에 선거법을 시행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 같다. 하라(原敬) 수상이 여러 청원

에 대해 의회에서 언명한 바를 통해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예정이 있는지 들리지 않는다. 만약 이대로 경과하면 가까운 장래에는 거의 그 희망이 없는 것과 같다. 이는 조선인으로서 가장 좋지 않은 일이다. 생각건대 조선은 4천 년의 역사를 지녔고 미약하지만 하나의 나라로 존립하였다. 그리고 병합 이후 10여 년을 경과하여 신정(新政)의 기초가 이미 확립되었다. 오늘날 설령 일반 문화의 정도가 일본과 같지는 않더라도, 약 2천만을 헤아리는 새로운 민생(民生)에 대해 본토와 그 대우를 달리하고 오래도록 국정에 참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바이다. 오히려 이번에 신속히 참정의 권리를 인정하여 국민으로서의 권능을 행사함과 동시에 그 본분을 다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각 방면을 대표하는 동지의 연서를 구비하여 조선 민중의 의사를 대표하는 취지로 감히 다음 요망을 건백한다. 부디 받아주기를 바란다.

1. 정부는 이번 조선의 실정을 살피 가장 가까운 장래에 중의원의원선거법을 조선에 시행한다는 취지의 칙령을 발포하기를 요망한다.

〈이상〉

1922년 3월

국민협회 회장 김명준(金明濬) 외 8,518명

제2회 건백서(가토 도모사부로(加藤友三郎) 내각)

정부는 조선 2천만 민중의 요망에 응하여 신속히 중의원의원선거법을 조선에 시행하기를 요망하여 다음과 같이 건백한다.

취지

우리는 일한병합의 근본 의의에 비추어 조선을 영구히 특수 법역(法域)으로 통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시세의 추이에 따른 인심의 추이를 보아 조선 민중으로 하여금 국정에 참여할 길을 여는 것은 아주 적절한 조치라고 믿는다. 조선에 중의원의원선거법을 시행할 것을 청원한 지 세 번째, 1921년 제44회 제국의회에서 드디어 중의원

이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1922년 1월 더욱이 동지 1만 명의 연서로 취지를 갖추어 선거법 시행의 건을 결정 발표할 것을 건백했지만 아직도 실현되지 않고 있다. 조선 2천만 민중은 국정에 참여할 권리가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종의 굴욕과 생활상의 고통을 느끼고 있다. 중의원이 위와 같이 기왕에 청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면 정부는 조선의 실정을 잘 살펴봄과 동시에 중의원의 의사를 존중하여 우리가 원하는 바가 달성되기를 바란다.

1923년 3월

국민협회 회장 김명준(金明濬) 외 11,209명

제3회 건백서(가토 다카아키(加藤高明) 내각)

정부는 조선 민중의 열망에 응하여 신속히 중의원의원선거법을 조선에 시행하기를 요망하여 다음과 같이 건백한다.

이유

우리는 중의원의원선거법의 시행을 제국의회에 세 번에 걸쳐 청원한 결과, 1921년 제 44회 제국의회에서 중의원이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1922년 및 23년 두 번에 걸쳐 신속한 선거법의 발표 실시를 촉구하기 위해 건백한 것은 내외가 모두 아는 사실이어서 또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아직 이것이 실현되지 않은 것에 우리는 심히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지금 조선의 정세는 시대사조의 악영향을 받아 민심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민심수습의 근본책을 펼치지 않으면 제국 발전의 앞날에 일대 암영을 드리울 뿐 아니라, 실로 오래도록 후회를 남길까 염려스럽다. 수습의 길은 조선에 거주하는 인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은 누차의 청원과 건백에서 주장하였다. 생각건대 일한병합의 근본의의는 조선과 일본 양 민족이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고 제국 경영의 임무를 함께 나누어 공존공영의 열매를 현양(顯揚)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한 첩경은 무엇보다 참정권을 조선 거주 주민에게 부여하는 것이라고 위에서도 이미 말한 바이다. 정부 당국 또한 이를 잘 이해하고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바라건대 정부는 조선의 현재 민정을 현명하게 살피어 신속히 우리가 바라는 바가 달성되기를 바란다.